研究報告書 96-01

治安與件의 差異에 따른 防犯活動體制 研究

《研 究 陣》

연 구	이 상 원(관 동 대 교수)
	최 응 열(동 국 대 강사)
연구지도위원	정 진 환(인 천 대 교수)
연 구 실 장	김 형 청(총 경)
연 구 관	정 순 도(경 정)

000274

발 간 사

치안연구소가 현재와 같은 연구체제를 갖추고 그동안 연구의 불모지였던 치안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세계화·지방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치안수요의 질적·양적 변화는 경찰조직의 운영과 치안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응방식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난 1년간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켜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발간되는 治安與件의 差異에 따른 防犯活動體制 硏究는 그중의 하나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본 과제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동대 이상원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경찰과 치안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보다 깊은 관심과 더 나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6. 5.

치안연구소장 김 본 성

目　次

第 1 章　序　論 ····· 9
第 1 節　研究의 目的 ····· 9
第 2 節　研究의 內容 및 方法 ····· 10
1. 研究의 內容 ····· 10
2. 研究의 方法 ····· 11
第 3 節　研究의 限界 ····· 12

第 2 章　治安與件과 地域的 特性 ····· 13
第 1 節　治安與件의 分析 ····· 13
1. 國際情勢의 變化 ····· 13
2. 國內情勢의 變化 ····· 14
第 2 節　調査對象地域의 地域的 特性과 治安與件 ····· 16
1. 地域的 特性 ····· 16
2. 治安與件 ····· 17

第 3 章　地域別 防犯活動實態 分析 ····· 21
第 1 節　調査方法 ····· 21
第 2 節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 22
1. 警察官 ····· 22
2. 住　民 ····· 24
第 3 節　派出所의 勤務形態 ····· 26
1. 勤務計劃의 適切性 ····· 26
2. 現 勤務交代制의 評價 ····· 27
3. 勤務時間의 適切性 ····· 28

4. 所內 및 待期勤務時間 活用 ····· 29
5. 派出所 1人 勤務制度에 대한 評價 ····· 30
第 4 節 派出所의 外勤警察活動 ····· 32
1. 警察 巡察活動 ····· 32
2. 112巡察車 運用 ····· 42
3. 諸調査業務 ····· 47
4. 防犯活動에 대한 認識 ····· 48
5. 住民과의 協助 ····· 59

第 4 章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善方案 ····· 65
第 1 節 分析結果의 要約 및 論議 ····· 65
第 2 節 地方化時代에 對備한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善方向 ····· 70
1. 理想的인 警察防犯活動體制의 前提條件 ····· 70
2. 새로운 警察防犯活動體制의 導入에 따른 豫想效果 ····· 71
第 3 節 地域的 特性에 따른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編 ····· 73
1. 大都市의 경우 ····· 73
2. 中小都市와 農漁村의 경우 ····· 79

第 5 章 結 論 - 綜合評價와 政策建議 ····· 82

參 考 文 獻 ····· 85

〈附 錄 I : 부 표〉 ····· 91

〈附 錄 II : 설문지〉 ····· 93
1. 경찰대상 설문지 ····· 93
2. 주민대상 설문지 ····· 101

表 目 次

〈表 2- 1〉 조사대상 경찰서의 현황 ····· 17
〈表 2- 2〉 도시규모별 치안여건에 관한 경찰의 견해 ····· 18
〈表 2- 3〉 도시규모별 치안여건에 관한 주민의 견해 ····· 19
〈表 3- 1〉 조사대상 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 23
〈表 3- 2〉 조사대상 주민의 일반적 특성 ····· 25
〈表 3- 3〉 도시규모별 파출소 근무계획에 대한 경찰의 견해 ····· 26
〈表 3- 4〉 도시규모별 파출소 2부제 근무교대에 관한 경찰의 견해 ····· 27
〈表 3- 5〉 도시규모별 근무교대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경찰의 견해 ····· 28
〈表 3- 6〉 도시규모별 현 근무시간에 대한 경찰의 견해 ····· 29
〈表 3- 7〉 도시규모별 소내 및 대기근무시간 활용에 대한 경찰의 견해 ····· 30
〈表 3- 8〉 도시규모별 파출소 1인 근무에 관한 경찰의 견해 ····· 31
〈表 3- 9〉 도시규모별 범죄취약지역의 순찰활동에 관한 경찰의 견해 ····· 35
〈表 3-10〉 도시규모별 범죄취약지역의 순찰활동에 관한 주민의 견해 ····· 36
〈表 3-11〉 도시규모별 경찰관 순찰활동 목격빈도에 대한 주민의 견해 ····· 37
〈表 3-12〉 도시규모별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한
경찰의 견해 ····· 38
〈表 3-13〉 도시규모별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한
주민의 견해 ····· 38
〈表 3-14〉 112순찰차의 연도별 배치 현황 ····· 39
〈表 3-15〉 도시규모별 효과적인 방범순찰 시간대에 관한 경찰의 견해 ····· 40
〈表 3-16〉 도시규모별 효과적인 방범순찰 시간대에 관한 주민의 견해 ····· 41
〈表 3-17〉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 43
〈表 3-18〉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 44
〈表 3-19〉 도시규모별 112순찰차 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 45
〈表 3-20〉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의 기동성 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 46
〈表 3-21〉 도시규모별 파출소와 112순찰차와의 통신관계에 대한
경찰의 견해 ····· 47
〈表 3-22〉 도시규모별 파출소의 제조사업무에 대한 경찰의 견해 ····· 48
〈表 3-23〉 도시규모별 경찰이 중시하는 경찰활동 ····· 49
〈表 3-24〉 도시규모별 주민이 중시하는 경찰활동 ····· 49
〈表 3-25〉 도시규모별 파출소 업무에 관한 경찰의 견해 ····· 50
〈表 3-26〉 정규경찰과 비정규경찰 비교 ····· 51
〈表 3-27〉 도시규모별 의경의 방범활동에 관한 경찰의 견해 ····· 52
〈表 3-28〉 도시규모별 의경의 방범활동에 관한 주민의 견해 ····· 52
〈表 3-29〉 도시규모별 의경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 53
〈表 3-30〉 도시규모별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견해 ····· 54
〈表 3-31〉 도시규모별 방범대원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 55
〈表 3-32〉 도시규모별 구역책임순찰제에 관한 경찰의 견해 ····· 55
〈表 3-33〉 도시규모별 경찰방범활동의 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 56
〈表 3-34〉 도시규모별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 57
〈表 3-35〉 도시규모별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 58
〈表 3-36〉 도시규모별 경찰서와 파출소의 직제개편에 관한 경찰의 견해 ····· 59
〈表 3-37〉 도시규모별 방범활동에 있어 주민협조에 대한 경찰의 견해 ····· 60
〈表 3-38〉 도시규모별 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주민 자신의 협조정도 ····· 61
〈表 3-39〉 도시규모별 주민의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한 경찰의 견해 ····· 61
〈表 3-40〉 도시규모별 주민의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한 주민 자신의 견해 ··· 62
〈表 3-41〉 도시규모별 청원경찰/용역경비업체직원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경찰의 견해 ····· 64

圖 目 次

〈圖 4－1〉 새로운 警察署 組織 ····· 74
〈圖 4－2〉 地區警察署의 構成 ····· 75
〈圖 4－3〉 中小都市.農漁村의 警察署와 派出所 構成 ·····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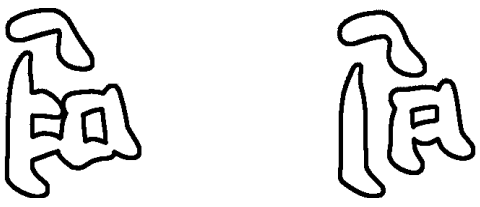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현대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都市化 現象, 社會組織과 機能의 급속한 分化, 傳統的 倫理規範의 瓦解 등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류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변화 가운데 인간의 안전을 해치는 犯罪問題는 바로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1990년 10월 13일 犯罪와의 戰爭 宣布 이후 경찰업무의 주요 기조가 時局治安에서 民生治安으로의 대전환이 있게 되었고, 현재는 警察의 世界化라는 시대적 흐름하에 경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경찰의 세계화 범주는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 일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고치려는 것이다.[1] 이제까지의 한국경찰은 조국의 근대화와 함께 조직과 기능면에서 國家安保 위주의 國家警察制度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2000년대의 경찰은 世界化.國際化된 警察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경찰의 임무와 기능을 냉철히 인식하여 효과적인 경찰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2]

따라서 오늘날 경찰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과 함께 생활하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1) 李相安, 新警察行政學(서울: 대한문화사, 1995), 715쪽.

2) 趙炳仁, "警察의 世界化에 관한 硏究," 韓國刑事政策硏究院, 刑事政策硏究, 통권 제21호 (1995년 봄호), 74쪽.

경찰은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경찰기관과 경찰관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분리될 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존재나 지지없이는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지역사회의 협조없이는 그들의 업무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 분명하며 경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범죄현상의 심각성과 불안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는 바, 경찰이 효과적으로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을 보호하고 社會公共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檢擧.鎭壓하는 事後的 措置보다는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豫防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틀림없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중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경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效果的인 治安對應能力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제도와 운영체제의 개혁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硏究의 目的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治安與件의 差異에 따른 防犯活動體制를 評價함으로써 현재의 防犯活動體制가 급변하고 있는 治安環境에 필요한 適應力을 갖추고 있는가를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第 2 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1. 硏究의 內容

1990년 犯罪와의 戰爭宣布 이후 治安業務의 주요 기조가 民生治安으로 바뀜에 따라 경찰조직은 민생치안의 최일선조직인 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경찰자원의 확대 뿐만 아니라 파출소와 경찰서의 조직 및 운영체제의 개선을 통해 기존 人的·物的 資源의 效率性과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이 硏究의 주요 內容으로서

첫째 治安與件의 差異에 따른 防犯活動體制를 파악하기 위해 大都市.中小都市 및 農漁村 警察官들과 地域 住民 1,40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여 이를 分析해 보았다. 아울러 현행 警察 防犯活動의 實態와 問題點을 도출하여 새로운 防犯活動體制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당화시켰다.

둘째 기존의 경찰서와 현행 파출소 운영체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발될 새로운 방범활동체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

셋째 우리 나라의 방범활동체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요 선진국가의 경찰조직도 살펴보았다. 즉, 우리 나라와 치안환경이 다른 미국과 우리 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의 방범활동체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나라 방범활동체제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고려했다.

넷째 이상에서 분석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방범활동체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地區警察署槪念을 개발해 보았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범활동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건의하였다.

2. 硏究의 方法

이 연구는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판단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방범활동체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를 토대로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를 개발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 방범활동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대도시·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경찰관과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치안여건, 경찰 순찰활동, 근무형태, 주민협력, 현행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체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第 3 節 研究의 限界

이 연구는 현행 방범활동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범활동체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직운영상의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警察 防犯活動體制의 力量을 강화하기 위해서 人力과 裝備의 보강문제를 비롯하여 이상적인 경찰 방범활동체제의 전제조건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방범활동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研究의 限界로서는

첫째 이 연구는 전국 경찰서 단위의 방범활동체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95년 8월 31일까지 완결해야 하는 短期 研究課題여서 전국의 大都市와 中小都市, 農漁村을 대상으로 완벽한 實態調査를 하지 못하고 大都市.中小都市 및 農漁村地域 警察署의 警察官과 管轄住民 각각 70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 研究에 이용한 설문지 응답자들의 代表性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大都市 警察署 두 곳과 中小都市 및 農漁村의 세개 警察署가 우리나라 全國 警察署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研究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 이 研究는 設問調査 외에 文獻調査를 병행하였으며 事前研究結果에 대해 보다 客觀的 評價를 기하려고 하였다.

세째 우리 나라 경찰은 외국경찰과는 달리 警察官職務執行法 第2條 第2號에서와 같이 對間諜作戰業務까지 遂行하고 있다. 그래서 防犯活動도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權力作用이라고 廣義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防犯活動體制를 研究하는 데 있어서도 國家保衛的 側面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이 研究에서는 警察職務分掌上 防犯部署의 業務機能을 理想的인 體制로 改善한다는 側面에서 警察의 特殊事情 등은 研究對象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第 2 章　治安與件과 地域的 特性

第 1 節　治安與件의 分析

오늘날 경찰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현상이 본격화되고, 고도산업화와 정보화의 추세 또한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에 즉응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체제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장래 치안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國際情勢의 變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이념적 대결의 兩極體制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로 각국이 경제적 이해를 중시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冷戰體制의 終熄은 국제관계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각국은 이제 우방관계를 떠나 국가간 무한 자유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公安, 情報 등과 관련한 時局治安需要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쟁국에 대한 經濟情報蒐集, 國際詐欺, 外國人管理, 國際捜査共助 등 경찰의 국제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내국인의 해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1], 내·외국인 범죄자의 도피, 국제적인 밀수·항공기납치·테러행위 등 국제적인 범죄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유입되는 개발도상국 인력의 불법취업과 체류, 다

1) 외국인범죄는 20년전 1975년에 1,362건에 1,506명이 관련되었으나 20여년이 지난 오늘 외국인 범죄건수는 3,849건에 4,795명이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崔平吉, "警察의 需要變化와 對應方向," 治安硏究所, 創警 50周年記念 治安政策세미나 자료집, 1995. 10. 17, 60쪽.

국적 기업에 의한 범죄, 국제범죄조직을 통한 불법행위와 범죄 등이 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 國內情勢의 變化

우선 정치적 변화로서 그동안 民主主義의 定着과 發展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은 수차례에 걸친 憲政中斷事態와 1인 장기집권이었으나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통치권의 정당성이 강화됨으로써 민주화의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量的 成長戰略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국가장기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이제까지의 개발정책이 지역간 여건의 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또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地方化時代의 진입으로 치안영역, 치안기능, 지방과 중앙정부의 치안질서의 종류, 영역, 기능, 임무, 책임면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도 대처해야만 한다. 특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자치에 따른 주민의 생활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대정부 불법시위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치안사건 발생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분규와 집단민원이 팽창하게 되었다. 이에 그 동안 경찰은 대정부 불법시위 관련자에 관한 중점관리, 지역탐색 및 통제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단순히 치안유지적 차원에서 억압과 통제를 하기에 앞서, 경찰공공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조정자의 입장에서 개입해야 하며, 일선 파출소의 역할과 기능도 지역탐색 및 통제를 위한 거점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방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둘째로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기존 산업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즉, 산업사회를 대체하는 정보통신사회의 출현으로 지역적 개념이 약화되고, 특히 통신기계의 광범위한 보급으

로 범죄가 광역화·조직화·전문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전문화와 장비의 현대화가 또한 절실히 요망된다.

그리고 국민간의 공동체의식의 약화와 개인정보의 유출을 거부하는 폐쇄적 인간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협력의식은 약화되는 반면 주민 개개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는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째로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가를 즐기려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주말 유동인구에 따른 주중-주말 치안수요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동안에는 기본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강.절도나 격정에 의한 폭행·상해범죄가 주류를 이루어 범죄사건의 인과관계규명이 용이하였고 사건의 법률관계도 비교적 명백한 경우가 많았다. 종전에도 여전히 보복살상이 있었고 성범죄가 있었지만 범죄의 동기가 분명하여 수사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놀라울만큼 향상된 요즘은 값진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훔치는 기업형절도가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범죄, 환경범죄, 식품범죄, 신용카드범죄, 컴퓨터범죄, 보험범죄, 조직폭력, 재산상속을 노린 존속살상 등 종전에는 아예 없었거나 사례가 희귀하였던 범죄유형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활동의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연간 130만건 이상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범죄의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범죄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범죄의 발생범위도 광역화·기동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동안의 범죄규모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특별법범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보급의 확대에 따른 교통범죄의 증가현상이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늘리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2] 따라서 종래와 같은 획일적 방범활동체제로서는 이상과 같은 치안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게 된다.

2)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4, 30, 34쪽.

네째로 우리 나라의 인구는 현재 4,546만명, 가구수로는 1,381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되어 零의 인구증가율이 실현되는 2021년의 총인구는 약 5,100만명으로 최대수준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정체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중한 인구밀도는 인구와 자원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주택·교육·고용·환경문제는 물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르는 인간소외, 범죄유발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인구구조의 형태도 현재의 鐘形으로부터 선진국형에 가까운 항아리형으로 변형될 것이므로 정년연장문제와 노인문제가 보다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로의 인구집중현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第 2 節　調査對象地域의 地域的 特性과 治安與件

1. 地域的 特性

조사대상지역 경찰서의 현황을 보면 〈表 2-1〉과 같다.

우선 관할구역을 보면 대도시 경찰서는 0.009㎢~0.01㎢에 불과하나 중소도시나 농어촌 경찰서의 경우 2.96㎢~5.85㎢로 대도시에 비해 296~650배 정도로 경찰서 관할구역이 아주 광범하다. 그러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대도시 경찰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 경찰서에 비해 4.4~9.5배에 달하고 있으며, 대도시 경찰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경찰서에 비해 유동인구마저 많아 치안여건이 매우 불리하다.

또한 장비현황을 보면 대도시 파출소의 경우 파출소당 112순찰차가 1대 정도는 배치되어 있으나 농어촌 파출소의 경우 112순찰차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별 치안수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안상태가 취약한

지역과 양호한 지역의 치안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자원인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表 2-1〉 조사대상 경찰서의 현황

현황 / 경찰서	관할구역		인구(명)			경찰관수(명)	장비현황				
	행정구역	관할면적(㎢)	상주인구	유동인구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112 순찰차	오토바이	자전거	가스총	무전기
대도시 D경찰서	13개동	5.081	151,020	150만	2,700	541	16대	48대	23대	242정	514개
대도시 J경찰서	7개동	4.67	28,399	150만	3,000	489	10대	34대	34대	136정	207개
중소도시·농어촌지역 K경찰서	1개읍, 16개동, 7개면	1.021	234,100		616	345	11대	50대	40대	114정	214개
중소도시·농어촌지역 S경찰서	1개읍, 13개동, 5개면	732.77	109,846		317	268	8대	31대	27대	51정	201개
중소도시·농어촌지역 S경찰서	2개읍, 6개동, 6개면	1,240.33	96,751		456	212	6대	30대	31대	96정	179개

출처: 경찰청 자료

2. 治安與件

도시규모에 따른 치안여건에 관한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살펴보면 서로 상반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경찰은 파출소 관할지역의 치안여건에 관해 〈表 2-2〉에서와 같이 대도

시의 경우 치안여건이 '아주 양호하다'가 10.7%, '양호하다'가 63.4%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각각 4.2%, 55.9%이고 농어촌은 각각 7.6%, 58.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경찰관의 74.1%가 관할지역 파출소의 치안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소도시의 60.1%, 농어촌의 65.8%보다 높게 나타났다.

〈表 2-2〉 도시규모별 치안여건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치안여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아주 양호하다	37(10.7)	11(4.2)	6(7.6)	54(7.8)
양호하다	220(63.4)	147(55.9)	46(58.2)	413(59.9)
그저 그렇다	76(21.9)	75(28.5)	26(32.9)	177(25.7)
불안하다	12(3.5)	26(9.9)	0	38(5.5)
아주 불안하다	2(0.6)	4(1.5)	1(1.3)	7(1.0)
계	347(50.4)	263(38.2)	79(11.5)	689(100.0)

(X^2= 31.33 자유도=8 P< .001)

이에 반해 도시규모에 따른 거주지역의 치안여건에 관한 주민의 견해를 보면, 〈表 2-3〉에서와 같이 대도시의 경우 치안여건이 '아주 양호하다'가 6.0%, '양호하다'가 29.7%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각각 5.1%, 29.8%이고 농어촌은 각각 24.8%, 40.0%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이 거주지역의 치안여건에 관해 64.8%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여 대도시(35.7%)나 중소도시(34.9%)보다 치안여건을 양호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지역 치안여건에 관한 주민들의 견해에서 '그저 그렇다'가 대도시는 40.5%, 중소도시는 40.4%, 농어촌은 14.3%로 나타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주민들은 거주지역 치안여건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주민들은 거주지역 치안여건이 양호하지도 불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치안여건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公式統計에 나타난 一般國民들의 意識과 비교해 보면 國民 57.6%는 犯

罪被害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夜間步行時 都市의 55.8%가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女子의 경우 "밤에 外出 또는 歸家할 때 혼자 걷기가 두려운 곳이 있다"는 應答比率이 60.9%에 달하고 있다.[3] 따라서 이 硏究의 標本對象地域 住民들이 一般國民들보다 덜 不安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治安與件에 대해 不安해 하는 住民이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2-3〉 도시규모별 치안여건에 관한 주민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치안여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계
아주 양호하다	14(6.0)	14(5.1)	26(24.8)	54(8.8)
양호하다	69(29.7)	82(29.8)	42(40.0)	193(31.5)
그저 그렇다	94(40.5)	111(40.4)	15(14.3)	220(35.9)
불안하다	49(21.1)	50(18.2)	18(17.1)	117(19.1)
아주 불안하다	6(2.6)	18(6.5)	4(3.8)	28(4.6)
계	232(37.9)	275(44.9)	105(17.2)	612(100.0)

(X^2= 61.34 자유도=5 p< .001)

이상에서 도시규모에 따른 경찰과 주민의 치안여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경찰은 치안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7.7%이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5%인 반면에 주민의 경우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0.3%이고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3.7%로 나타나 치안여건에 관하여 주민보다는 경찰이 양호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도시규모별 치안여건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치안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주민의 경우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이 치안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주민들은 치안여건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경찰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333 334쪽.

따라서 중요한 것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자인 경찰보다도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확한 治安需要의 파악이 필요하며, 그에 맞게 警察人力 및 裝備의 適正한 配分 등 防犯活動體制의 改善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第 3 章　地域別 防犯活動實態 分析

第 1 節　調査方法

이 연구는 현재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構造化된 設問紙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연구목적상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였다. 이 중 大都市를 대표하는 도시로는 서울을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30개의 경찰서 가운데 J경찰서와 D경찰서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中小都市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전국을 5개의 集落(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으로 나누었으며, 5개의 集落 가운데 강원도를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그 다음 中小都市 가운데 農業과 漁業이 가능한 도시를 고려하여 K경찰서, S경찰서, S경찰서를 무작위로 標集하였다. 주민에 대한 標集方法도 경찰관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경찰관과 주민 모두 동일한 질문을 원칙으로 하여 크게 ① 치안여건 ② 경찰 순찰활동 ③ 근무형태 ④ 주민협력 ⑤ 현행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체제 ⑥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1995년 6월 3일부터 1995년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標本對象者를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設問標本은 경찰관과 주민 각각 700부가 배포되었으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경찰관 692부와 주민 61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에 응답된 調査資料는 編輯(editing)과 符號化作業(coding)을 거쳐 사회통계분석패키지인 SPSS PC$^+$를 이용하여 頻度分析(frequency analysis)과 交叉分析(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第 2 節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1. 警察官

調査對象 警察官의 一般的인 特性을 보면 〈表 3－1〉과 같다.

標集調査된 警察官의 社會·人口學的 特性을 보면 먼저 年齡別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5.8%로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20대가 22.0%,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40대가 26.4%, 50세 이상은 15.8%로 나타났다.

階級別로는 警衛이상의 幹部는 71명으로 10.4%이며, 警査는 88명으로 12.9%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警長.巡警으로서 警長이 278명 40.7%이며, 巡警은 246명 36.0%로 警査이하의 非幹部級은 612명인 89.6%로 나타났다.

勤務地는 外勤者가 615명으로 90.3%로 대부분이 外勤者였으며, 內勤者는 66명으로 9.6%로 나타났다.

調査對象者의 學歷別 分布(中退 포함)를 보면 高等學校 卒業 이하가 가장 많은 72.7%의 比率을 보이고, 大學校 卒業 이상 14.0%, 專門大學 卒業 이하 12.2%, 中學校 卒業 이하가 0.9%, 國民學校 卒業 이하 0.1%, 無學 0.1%의 순으로 되어 있다.

調査對象者의 採用方法別 分布는 巡警 公開採用이 92.9%로 대부분의 警察官이 巡警公採로 警察에 任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警長·警査特別採用 1.3%, 警察幹部候補生 2.2%, 警察大學 卒業 2.2%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調査對象者의 地域別 分布는 大都市 50.3%, 中小都市 38.3%, 農漁村 11.4%로 나타났다.

〈表 3－1〉 조사대상 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變 因 名	區 分	頻 度(%)
年 齡	20세 이상 ~ 30세 미만	151(22.0)
	30세 이상 ~ 40세 미만	245(35.8)
	40세 이상 ~ 50세 미만	181(26.4)
	50세 이상	108(15.8)
	계	685(100.0)
階 級	경 감	8(1.2)
	경 위	63(9.2)
	경 사	88(12.9)
	경 장	278(40.7)
	순 경	246(36.0)
	계	683(100.0)
勤 務 地	경찰서 소재지 파출소	495(72.7)
	경찰서 소재지외 파출소	120(17.6)
	경 찰 서 방 범 과	62(9.1)
	경 찰 청 방 범 국	3(0.4)
	지 방 경 찰 청 방 범 과	1(0.1)
	계	681(100.0)
學 歷	무 학	1(0.1)
	국 졸 이 하	1(0.1)
	중 졸 이 하	6(0.9)
	고 졸 이 하	495(72.7)
	전 문 대 졸 이 하	83(12.2)
	대 졸 이 상	95(14.0)
	계	681(100.0)
採用方法	순 경 공 채	632(92.9)
	경 장 · 경 사 특 채	9(1.3)
	간 부 후 보 생	15(2.2)
	경 찰 대 학	15(2.2)
	기 타	9(1.3)
	계	680(100.0)
勤務警察官署	서 울 J 경 찰 서	145(21.0)
	서 울 D 경 찰 서	203(29.3)
	강 원 K 경 찰 서	181(26.2)
	강 원 S 경 찰 서	52(7.5)
	강 원 S 경 찰 서	61(8.8)
	방 범 간 부 교 육 생	50(7.2)
	계	692(100.0)

2. 住 民

調査對象者 가운데 주민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表 3-2〉와 같다.

標集調査된 住民들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을 보면 먼저 年齡別 分布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0.0%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20대가 30.3%,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40대가 21.4%, 50세 이상 8.4%의 순으로 되어 있다.

調査對象者의 居住地域을 보면 단독주택지역.아파트나 연립주택지역 등 주택가 58.9%, 공업지역 8.2%, 상업지역 14.8%, 농어촌 지역 17.4%이다.

調査對象者의 學歷別 分布(中退 포함)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은 38.2%의 비율을 보이고, 대학교 졸업 이상 34.6%, 전문대학 졸업 이하 14.7%, 중학교 졸업 이하 6.1%, 국민학교 졸업 이하 5.1%, 무학 1.2%의 순으로 되어 있다.

調査對象者의 婚姻狀態는 結婚이 68.4%로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未婚 28.8%, 死別과 離婚이 각각 2.0, 0.8%의 순으로 되어 있다.

調査對象者의 性別 分布는 男子가 54.1%, 女子가 45.9%로 남자가 약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調査對象者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는 50만원 미만 9.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4.2%, 300만원이상 5.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調査對象者의 地域別 分布는 大都市 37.8%, 中小都市 44.8%, 農漁村 17.4%로 나타났다.

〈表 3-2〉　조사대상 주민의 일반적 특성

變 因 名	區　　分	頻　度(%)
年　齡	20세 이상 ~ 30세 미만	184(30.3)
	30세 이상 ~ 40세 미만	243(40.0)
	40세 이상 ~ 50세 미만	130(21.4)
	50세 이상	51(8.4)
	계	608(100.0)
居住地域	단독주택지역(시단위)	90(14.8)
	아파트나 연립주택지역(시단위)	268(44.1)
	공업지역(시단위)	50(8.2)
	상업지역(시단위)	90(14.8)
	농어촌지역(군단위)	106(17.4)
	기타	4(0.7)
	계	608(100.0)
學　歷	무학	1(0.1)
	국졸이하	1(0.1)
	중졸이하	6(0.9)
	고졸이하	495(72.7)
	전문대졸 이하	83(12.2)
	대졸이상	95(14.0)
	계	681(100.0)
婚姻狀態	미혼	175(28.8)
	결혼	415(68.4)
	사별	12(2.0)
	이혼	5(0.8)
	계	607(100.0)
性　別	남자	329(54.1)
	여자	279(45.9)
	계	608(100.0)
月 平均 家口所得	30만원 미만	23(3.8)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35(5.8)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23(36.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6(34.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86(14.2)
	300만원 이상	33(5.4)
	계	606(100.0)

第 3 節 派出所의 勤務形態

1. 勤務計劃의 適切性

〈表 3-3〉 도시규모별 파출소 근무계획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근무계획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형식적이다	111(32.3)	83(31.7)	21(26.6)	215(31.4)
근무능력을 전혀 고려안함	102(29.7)	70(26.7)	18(22.8)	190(27.7)
근무능력을 조금 고려함	78(22.7)	74(28.2)	23(29.1)	175(25.5)
근무능력에 맞게 편성함	53(15.4)	35(13.4)	17(21.5)	105(15.3)
계	344(50.2)	262(38.2)	79(11.5)	685(100.0)

(X^2= 6.81 자유도= 6 p< .5)

파출소의 근무는 월중 근무계획에 의하여 1일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근무가 짜여지는데 이러한 파출소의 근무계획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보면 〈表 3-3〉과 같이 응답자의 31.4%가 '형식적인 근무계획이다'에 의견을 표시했고, 27.7%가 '직원의 근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 응답자의 59.1%가 근무계획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파출소의 근무계획이 형식적이다와 직원의 근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대도시의 경우 각각 32.3%, 29.7%, 중소도시 31.7%, 26.7%, 농어촌은 26.6%, 22.8%로 나타나, 농어촌(49.4%)보다는 대도시(62.0%)와 중소도시(58.4%)의 경찰이 파출소의 근무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現 勤務交代制의 評價

〈表 3-4〉 도시규모별 파출소 2부제 근무교대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근무계획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문제 전혀 없음	10(2.9)	26(10.0)	11(14.7)	47(7.0)
문제 약간 있으나 현행 교대제 유지	30(8.8)	64(24.7)	19(25.3)	113(16.7)
근무능력을 조금 고려함	74(21.6)	76(29.3)	21(28.0)	171(25.3)
근무능력에 맞게 편성함	228(66.7)	93(35.9)	24(32.0)	345(51.0)
계	342(50.6)	259(38.3)	75(11.1)	676(100.0)

(X^2= 81.11 자유도= 6 p< .001)

파출소 직원들을 2개조로 나누어 1일 24시간 근무, 1일 비번이라는 2부제 근무교대제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그 결과는 〈表 3-4〉와 같이 2부제 근무교대에 대해 대도시의 경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9%이며, '문제가 약간 있으나 현행 교대제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8.8%로 '현 근무교대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1.7%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가 10.0%, '문제가 약간 있으나 현행 교대제를 바꿀 필요는 없다'가 24.7%로 '현 근무교대제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4.7%로 나타났다. 농어촌은 '문제가 전혀 없다'가 14.7%, '문제가 약간 있으나 현행 교대제를 바꿀 필요는 없다'가 25.3%로 '현 근무교대제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0%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교대제를 약간 또는 완전히 개선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가 88.3%, 중소도시가 65.2%, 농어촌이 60.0%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현 2부제 근무교대를 개선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현행 교대제를 개선시키자는 의견을 표시한 응답자중 어떠한 근무교대 형태를 선호하는가를 조사해 보니 <表 3-5>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적으로 3부제(일근, 당번, 비번)로의 개선을 원하는 응답자는 50.2%이며, 3교대제(1일 8시

간씩, 3교대)로의 개선을 원하는 응답자는 26.9%로 나타났으며, 2교대제(1일 12시간씩, 2교대)를 원하는 응답자도 10.8%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3부제가 54.1%, 3교대제가 20.1%, 기타 18.9%, 2교대제 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3부제가 46.9%, 3교대제가 35.5%, 2교대제가 13.6%로, 농어촌은 3부제가 41.5%, 3교대제가 32.3%, 2교대제가 21.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일본과 같이 4부제 근무는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3부제 근무실시를 위해 인력충원과 적절한 근무모형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表 3-5〉 도시규모별 근무교대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근무교대제의 개선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3교대제(1일 8시간씩, 3교대)	68(20.1)	81(35.5)	21(32.3)	170(26.9)
2교대제(1일 12시간씩, 2교대)	23(6.8)	31(13.6)	14(21.5)	68(10.8)
3부제(일근, 당번, 비번)	183(54.1)	107(46.9)	27(41.5)	317(50.2)
기 타	64(18.9)	9(3.9)	3(4.6)	76(12.0)
계	338(53.6)	228(36.1)	65(10.3)	631(100.0)

(X^2= 57.60 자유도= 6 p< .001)

3. 勤務時間의 適切性

〈表 3-6〉에서 현 근무시간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가정생활에 불화를 줄 정도로 과중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5.0%이며,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5.3%로 ⅔이상인 70.3%의 경찰관이 아직도 근무시간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교대제라면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 25.6%, 현 근무시간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3.5%로 현 근무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경찰관은 29.1%에 불과하다.

도시규모별로 현 근무시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면 대도시는 '가정생활에 불화

를 줄 정도로 과중하다'가 42.4%,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가 40.4%, '2교대제라면 그런대로 괜찮다'가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2교대제라면 그런대로 괜찮다'가 34.1%,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가 32.6%, '가정생활에 불화를 줄 정도로 과중하다'가 2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은 '2교대제라면 그런대로 괜찮다'가 47.4%, '가정생활에 불화를 줄 정도로 과중하다'가 26.9%,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가 21.8%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근무시간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경찰관의 비율이 대도시 82.8%, 중소도시 60.2%, 농어촌 48.7%로 특히 대도시 경찰관들의 근무시간이 매우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6〉 도시규모별 현 근무시간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근무시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과중하다	146(42.4)	72(27.6)	21(26.9)	239(35.0)
2교대라면 괜찮다	49(14.2)	89(34.1)	37(47.4)	175(25.6)
많은 편이다	139(40.4)	85(32.6)	17(21.8)	241(35.3)
적절하다	9(2.6)	13(5.0)	2(2.6)	24(3.5)
모르겠다	1(0.3)	2(0.8)	1(1.3)	4(0.6)
계	344(50.4)	261(38.2)	78(11.4)	683(100.0)

(X^2= 61.20 자유도= 8 p< .001)

4. 所內 및 待期勤務時間 活用

소내 및 대기근무란 외근경찰의 기본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내에서의 문서 수발 및 부책정리, 전화취급 또는 속보, 즉보 및 수배사항의 보고, 소내에서의 사건취급 및 처리, 소내에서의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시, 소내의 청소정돈 및 자체경비, 민원 및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지리교시, 기타 제 안내, 조회, 교양, 지시, 기타 소내에서 행하는 제근무를 말한다.

외근경찰관이 소내근무를 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및 정확한 근무태도

로서 책임있는 근무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내근무 이외의 대기근무자를 두고 있으며,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를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들은 소내 및 대기근무시간에 대하여 〈表 3-7〉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사건취급 및 처리(41.6%)와 잡무처리(35.0%)를 하며 청사청소 및 비치부책 정리(19.1%)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개인용무나 잡담과 휴식은 4.2%로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대도시는 사건취급 및 처리(33.2%), 청소나 비치부책 정리(29.5%), 잡무처리(33.5%)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중소도시는 사건취급 및 처리(49.4%)와 잡무처리(38.1%)가 주를 이루며 청소나 비치부책 정리는 7.4%만이 응답하였다. 농어촌은 사건취급 및 처리(53.2%)와 잡무처리(31.2%)를 대기근무시간에 주로 하며 청소나 비치부책 정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7〉 도시규모별 소내 및 대기근무시간 활용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대기근무시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개인용무나 잡담	6(1.7)	5(1.9)	0	11(1.6)
휴식	7(2.0)	8(3.1)	3(3.9)	18(2.6)
사건취급 및 처리	115(33.2)	127(49.4)	41(53.2)	283(41.6)
청소나 비치부책 정리	102(29.5)	19(7.4)	9(11.7)	130(19.1)
잡무처리	116(33.5)	98(38.1)	24(31.2)	238(35.0)
계	346(50.9)	257(37.8)	77(11.3)	680(100.0)

(X^2= 56.11 자유도= 8 $p<.001$)

5. 派出所 1人 勤務制度에 대한 評價

1995年 3月 15日부터 巡察.防犯團束 등의 業務를 極大化시키기 위해 自律巡察

(區域巡察)制度를 導入하여 所內 勤務者 한명을 지정하여 待機勤務役割까지 겸임하도록 하는 등 派出所 機能을 犯罪豫防 및 治安의 據點으로 전환키 위한 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관 자신의 견해를 살펴보면 〈表 3-8〉과 같다. 대도시는 파출소에 1인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고 4.1%가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는 11.5%, 농어촌은 16.6%로 나타났다. 그리고 파출소에 1인이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대도시는 92.5%, 중소도시는 81.9%, 농어촌은 67.9%로 나타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파출소에 1인이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警察 絶對人力의 不足으로 犯罪豫防을 위해 되도록 많은 경찰관을 순찰에 종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派出所에 1인의 警察官이 所內에서 勤務하는 관계로 派出所가 奇襲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諸調査 및 參考人調査 業務, 緊急한 事件事故 出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表 3-8〉 도시규모별 파출소 1인 근무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1인 시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적절함	4(1.2)	7(2.7)	3(3.8)	14(2.0)
적절하다	10(2.9)	23(8.8)	10(12.8)	43(6.3)
그저 그렇다	12(3.5)	17(6.5)	12(15.4)	41(6.0)
부적절하다	98(28.2)	102(39.2)	38(48.7)	238(34.7)
아주 부적절하다	223(64.3)	111(42.7)	15(19.2)	349(50.9)
계	347(50.7)	260(38.0)	78(11.4)	685(100.0)

(X^2= 73.97 자유도= 8 $p<.001$)

第 4 節 派出所의 外勤警察活動

1. 警察 巡察活動

1) 巡察의 意義 및 目的

(1) 巡察의 意義

巡察이라 함은 外勤警察官이 警察任務의 遂行과 管內情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地域을 巡廻視察하는 外勤勤務를 말한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巡廻視察하는 勤務중에서도 特定한 目的, 예를 들면 非常配置 勤務者의 犯人檢擧를 위한 巡廻 등은 제외하고 평상시의 一般的인 勤務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犯罪의 豫防과 制止, 現行犯 및 被疑者의 逮捕, 危險發生의 防止(위험축대의 보수 등의 권유·경고 등), 危險防止를 위한 出入(공연장, 접객업소 등의 출입조사), 防犯·防火·防諜을 위한 指導啓蒙, 管內狀況의 觀察 및 把握, 迷兒.家出人 등의 發見, 保護와 手配, 警察事犯의 團束, 巡察중 認知한 事件의 取扱 및 處理와 같은 一般的인 巡廻勤務를 의미한다.[1]

犯罪는 犯罪行爲를 저지르고 싶은 慾望(犯罪欲求)과 그렇게 할 수 있는 機會(犯罪機會)가 있다는 確信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두 요소중 하나가 缺如되면 한 요소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犯罪를 저지를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두 要因을 除去하거나 縮小시키는 것이 基本的인 警察의 任務이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任務중에 하나는 個人의 犯罪性을 抑制 내지 除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犯罪實行을 妨害하기 위한 安全裝置를 취하는 것이다.[2]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비행 욕심은 어느 정도는 억제가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警察이 犯罪欲求를 완전히 抑制나 除去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犯罪의 機會를 완전히 除去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能力을 갖추기도 어렵다. 따라서 犯罪機會의 最大한

---

1) 순찰활동중에 경찰관이 수행하는 임무에 관해서는 [외근경찰관근무규칙(1991. 7. 31. 경찰청 훈령 제10호)] 제3장 제2절 제2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2) 李相安, 新警察行政學(서울: 대한문화사, 1995), 608쪽.

縮小와 犯罪成功에의 確信을 抑制하는 活動이 필요한 것이므로 巡察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3]

(2) 巡察의 重要性

巡察은 外勤勤務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근무이다. 犯罪豫防, 犯罪鎭壓, 住民保護, 對民奉仕 등의 면에서 巡察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犯罪機會의 事前 遮斷 내지 封銷와 犯罪機會의 存在에 대한 確信의 除去를 통한 犯罪行爲의 表出을 抑制하여 犯罪의 豫防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巡察은 어느 警察活動보다 효과가 높다.

豫防警察活動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巡察은 특히 그 效果性 測定이 어렵다. 犯罪發生件數의 減少나 檢擧件數의 增加, 市民輿論의 向上, 體感治安指數의 上昇 등으로 間接的인 評價가 가능하지만 鎭壓警察과 같은 直接的인 效果測定이 어렵기 때문에 巡察活動의 重要性에 대해 자칫하면 소홀해지기 쉽다. 다른 警察活動에 비해 많은 時間과 人力이 소모되고 명백한 實績이 없기 때문에 實績 위주의 成果主義 思考方式으로는 巡察活動의 重要性을 인식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警察活動의 焦點을 犯罪鎭壓보다 犯罪豫防에 두어야 한다는 當爲性의 부각과 巡察이 犯罪豫防을 위한 綜合的.效果的 活動이라는 認識의 확산에 따라 점차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巡察制度와 技法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巡察의 目的

巡察의 基本目的은 犯行機會의 除去와 犯罪成功에의 確信을 除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犯人은 巡察警察官이 있음으로써 犯行欲求가 減少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犯行機會가 적어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逮捕의 可能性은 犯行의 成功可能性이 없다는 확신을 범죄인에게 줌으로써 巡察은 警察의 여타 活動보다 效

3) 警察의 巡察 및 鎭壓活動 強化가 실제로 犯罪豫防效果를 지니느냐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지 않다. 그러나 警察의 巡察 및 鎭壓活動이 強化되면 우선 犯罪의 機會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潛在的 犯人들로 하여금 心理的으로 逮捕의 危險을 느끼게 하므로써 犯罪實行意志를 弱化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警察力의 集中配置는 犯罪豫防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Thomas F. Adams, Police Patrol: Tactics and Techniqu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pp. 2 8.

果的인 防犯活動手段이 되는 것이다. 특히 犯行現場 周邊에 대하여 충분한 警察力의 投入과 적절한 配置에 의한 效果的 巡察은 卽刻的인 逮捕를 할 수 있고, 이 사실은 즉시 言論媒體를 통하여 傳播되어 犯人들은 巡察力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犯行機會를 抛棄하게 된다.

둘째 목적은 犯罪豫防活動의 對備策을 제시한다. 예컨대 犯罪誘發狀況 및 條件의 發見, 不健全한 影響要因의 除去, 높은 倫理基準의 高揚, 이 밖에 困境에 처한 사람에 대한 協力, 救助, 助言, 激勵 등으로 마치 社會事業家와 같은 役割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외에도 社會逸脫 등의 反社會的 行動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사람에게 도움, 충고, 동정심을 줌으로써 사회일탈행동을 豫防하기도 한다.

세째 目的은 巡察로써 犯罪豫防에 실패했을 때 巡察을 통한 犯罪의 迅速한 搜査 및 犯人의 逮捕, 人命에 대한 應急措置와 財産의 現場回復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째 目的으로는 24시간 전시가지역을 순찰함으로서 非犯罪的 奉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非犯罪서비스로는 紛失物件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기, 市民들에게 情報를 提供해 주고 돕는 일, 交通統制 및 家庭問題의 解決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4] 그러므로 巡察警察官은 움직이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行政業務의 最一線勤務라고 할 수 있다.[5]

이하에서는 경찰활동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派出所의 巡察活動實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2) 巡察死角地帶

派出所 管轄地域內에 犯罪脆弱地區가 있는데도 巡察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 즉 巡察死角地帶가 관할구역내에 있는가를 보면 <表 3-9>와 같이 '아주 많다'와 '많은 편이다'가 각각 대도시의 경우 0.9%, 4.1%가 응답하였고 중소도시의 경우 0.8%, 7.2%, 농어촌의 경우는 0%, 3.8%가 응답하여 '아주 많다'

4) 李相安, 前揭書, 609 610쪽.

5) 警察大學, 警察防犯論, 1994, 82 83쪽.

와 '많은 편이다'를 합쳐도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몇군데 있다'와 '한두군데 있다'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각각 15.4%, 30.4%가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는 30.8%, 30.0%가 농어촌은 23.1%, 26.9%가 응답하여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든 지역에 순찰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도시 49.3%, 중소도시 31.2%, 농어촌 46.2%가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중소도시에서 순찰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대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巡察死角地帶를 없애기 위해 철두철미한 순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表 3-9〉 도시규모별 범죄취약지역의 순찰활동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순찰사각지대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많다	3(0.9)	2(0.8)	0	5(0.7)
많은 편이다	14(4.1)	19(7.2)	3(3.8)	36(5.2)
몇군데 있다	53(15.4)	81(30.8)	18(23.1)	152(22.2)
한두군데 있다	105(30.4)	79(30.0)	21(26.9)	205(29.9)
순찰이 잘 이루어진다	170(49.3)	82(31.2)	36(46.2)	288(42.0)
계	345(50.3)	263(38.3)	78(11.4)	686(100.0)

(X^2=32.20 자유도=8 P< .001)

반면에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表 3-10〉과 같다. 주민들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아주 많다'와 '많은 편이다'가 대도시의 경우 각각 5.4%, 12.9%가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8.8%, 25.7%, 농어촌의 경우는 11.5%, 40.4%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몇군데 있다'와 '한두군데 있다'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각각 37.5%, 23.7%가 응답하였고 중소도시는 36.4%, 23.5%, 농어촌은 26.9%, 5.8%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많다'와 '많은 편이다'를 합치면 농어촌이 51.9%로 대도시의 18.3%, 중소도시의 34.5%보다 높으며 '몇군데 있다'와 '한두군데 있다'를 합하면 대도시가 61.2%, 중소도시가 59.9%로 농어촌의 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모든 지역에 순찰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는 20.5%, 중소도시는 5.5%, 농어촌은 15.4%로 나타났다.

〈表 3－10〉 도시규모별 범죄취약지역의 순찰활동에 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범죄사각지대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많다	12(5.4)	24(8.8)	12(11.5)	48(8.0)
많은 편이다	29(12.9)	70(25.7)	42(40.4)	141(23.5)
몇군데 있다	84(37.5)	99(36.4)	28(26.9)	211(35.2)
한두군데 있다	53(23.7)	64(23.5)	6(5.8)	123(20.5)
순찰이 잘 이루어진다	46(20.5)	15(5.5)	16(15.4)	77(12.8)
계	224(37.3)	272(45.3)	104(17.3)	600(100.0)

(X^2= 65.65 자유도=8 p< .001)

이상에서 경찰과 주민의 도시규모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경찰의 42.0%가 순찰활동이 모든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에 주민은 12.8%가 모든 지역에서 순찰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경찰은 5.9%인 반면에 주민의 경우 31.5%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보다는 주민이 범죄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순찰활동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면 경찰이나 주민 모두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중소도시에서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목격빈도를 나타낸 〈表 3－11〉에서와 같이 '자주 목격한다'가 19.3%, '가끔 목격한다'가 50.3%, 거의 목격하지 못한다가 25.0%, 전혀 목격하지 못한다가 5.4%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들이 순찰활동을 목격하지 못하는 비율이 30.4%에 달하고 있어 가시적인 범죄예방효과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1〉 도시규모별 경찰관 순찰활동 목격빈도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목격빈도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자주 목격한다	47(20.3)	57(20.7)	14(13.3)	118(19.3)
가끔 목격한다	104(44.8)	153(55.6)	51(48.6)	308(50.3)
거의 목격하지 못한다	59(25.4)	59(21.5)	35(33.3)	153(25.0)
전혀 목격하지 못한다	22(9.5)	6(2.2)	5(4.8)	33(5.4)
계	232(37.9)	275(44.9)	105(17.2)	612(100.0)

(X^2= 22.19 자유도= 6 p< .005)

3) 效果的인 巡察方法

〈表 3-12〉는 파출소 관할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도보순찰이 46.0%,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38.8%, 오토바이순찰이 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70.3%, 도보순찰이 24.0%이며 농어촌은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70.9%, 도보순찰이 15.2%, 오토바이순찰이 12.7%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도보순찰을,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을 효과적인 순찰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관들이 대도시의 경우 관할구역의 협소와 교통의 혼잡 등으로 도보순찰을 선호하는데 비해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찰관들은 관할구역이 넓어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효과적인 순찰방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3-12〉 도시규모별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순찰방법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도 보	160(46.0)	63(24.0)	12(15.2)	235(34.1)
자 전 거	6(1.7)	5(1.9)	1(1.3)	12(1.7)
112 순 찰 차	135(38.8)	185(70.3)	56(70.9)	376(54.5)
오 토 바 이	46(13.2)	10(3.8)	10(12.7)	66(9.6)
대중교통수단	1(0.3)	0	0	1(0.1)
계	348(50.4)	263(38.1)	79(11.4)	690(100.0)

(X^2= 78.32 자유도= 8 P< .001)

반면에 〈表 3-13〉은 거주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하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表 3-13〉 도시규모별 범죄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순찰방법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도 보	76(32.8)	92(33.7)	12(11.5)	180(29.6)
자 전 거	34(14.7)	13(4.8)	11(10.6)	58(9.5)
112 순 찰 차	67(28.9)	103(37.7)	56(53.8)	226(37.1)
오 토 바 이	54(23.3)	57(20.9)	17(16.3)	128(21.0)
대중교통수단	1(0.4)	8(2.9)	8(7.7)	17(2.8)
계	232(38.1)	273(44.8)	104(17.1)	609(100.0)

(X^2= 54.21 자유도= 8 p<.001)

대도시의 경우 도보순찰이 32.8%,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28.9%, 오토바이 순찰이 23.3%, 자건거순찰이 14.7%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37.7%, 도보순찰이 33.7%, 오토바이순찰이 20.9%로, 농어촌은 112 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53.8%, 오토바이순찰이 16.3%, 도보순찰과 자건거순찰이

각각 11.5%, 10.6%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도보순찰이 효과적인 순찰방법이라고 생각하며,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순으로, 그리고 오토바이순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효과적인 순찰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찰방법에 대한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경찰과 주민 모두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효과에 대해 경찰 54.5%, 주민 37.1%가 응답하여, 경찰이 주민보다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보순찰에 대해서는 경찰 34.1%, 주민 29.6%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마찬가지로 주민보다 경찰이 도보순찰의 범죄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주민은 오토바이순찰이나 자건거순찰이 경찰보다는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대의 防犯警察은 人力防犯이라기 보다는 科學防犯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派出所는 科學防犯을 위한 防犯裝備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表 3-14〉 112순찰차의 연도별 배치 현황

연도 / 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2,283대	348대	888대	111대	579대	302대	55대

※ 출처: 警察廳 資料(1994년 12월 31일 현재)

이는 〈表 3-14〉와 같이 現代犯罪의 機動化와 廣域化 趨勢에 비추어 警察의 機動力은 治安의 必須的인 裝備임에도 불구하고 機動巡察과 防犯의 最一線이라고 할 수 있는 112巡察車가 3,404개의 派出所에 1994년 12월 31일 현재 2,283대가 配置되어 있다. 이중에서 2,007개 派出所(59%)에 1 2대씩 배치된 곳[6]도 있으나 1,397개 派出所(面단위 派出所 1,301개소, 邑단위 이상 96개소)에 아직까지 112巡察車가 配置되어 있지 않아 112指令體系의 전국 동시운영이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112순찰차가 배치되지 않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시급히 순찰차를 배치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4) 適正 巡察時間帶

〈表 3-15〉 도시규모별 효과적인 방범순찰 시간대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시간대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낮(오전 8시~오후 18시)	36(10.4)	14(5.3)	5(6.3)	55(8.0)
초저녁(오후 18시~21시)	22(6.4)	10(3.8)	3(3.8)	35(5.1)
밤(21시~24시)	152(44.1)	143(54.4)	50(63.3)	345(50.2)
새벽(0시~5시)	131(38.0)	94(35.7)	20(25.3)	245(35.7)
아침(5시~8시)	4(1.2)	2(0.8)	1(1.3)	7(1.0)
계	345(50.2)	263(38.3)	79(11.5)	687(100.0)

(X^2= 16.79 자유도=8 P< .05)

경찰의 방범순찰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보면 〈表 3-15〉에서 제시된 것처럼 밤(21시 24시) 50.2%, 새벽(0시 5시) 35.7%, 낮(오전 8시 오후 18시) 8.0%, 초저녁(18시 21시) 5.1%, 아침(5시 8시) 1.0%의 순으로 방범순찰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가 범죄취약시간대임을 알 수 있다.

도시규모에 따라 보면 낮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범순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가 10.4%, 중소도시가 5.3%, 농어촌이 6.3%로 각각 나타나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낮시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초저녁도 대도시가 약간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밤시간대는 농어촌(63.3

6) 서울 등 大都市 派出所중 管轄이 狹小하고 治安需要가 적은 곳은 112巡察車가 配置되어 있지 않아 隣接 派出所에서 出動.處理하고 있으며, 治安需要가 많은 派出所는 巡察車가 2대까지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 중소도시(54.4%), 대도시(44.1%)의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벽은 대도시(38.0%), 중소도시 (35.7%), 농어촌(25.3%)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규모에 따라 방범순찰의 효과적인 시간대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3-16〉 도시규모별 효과적인 방범순찰 시간대에 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시간대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낮(오전 8시~오후 18시)	11(4.8)	14(5.3)	5(6.3)	55(8.0)
초저녁(오후 18시~21시)	26(11.4)	10(3.8)	3(3.8)	35(5.1)
밤(21시~24시)	141(61.6)	143(54.4)	50(63.3)	345(50.2)
새벽(0시~5시)	49(21.4)	94(35.7)	20(25.3)	245(35.7)
아침(5시~8시)	4(1.2)	2(0.8)	1(1.3)	7(1.0)
계	345(50.2)	263(38.3)	79(11.5)	687(100.0)

(X^2=102.30 자유도=8 p< .001)

반면에 방범순찰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언제인지에 대한 주민의 견해를 보면 〈表 3-16〉에서 제시된 것처럼 밤(52.8%), 새벽(25.7%), 초저녁(15.1%), 낮(5.9%), 아침(0.5%) 순으로 방범순찰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경찰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가 적정 순찰시간대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규모에 따라 보면 낮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범순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도시가 4.8%, 중소도시가 1.5%, 농어촌이 20.0%로 각각 나타나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시간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초저녁도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의 경우 가족이 일하러 나가고 나면 빈집털이에 대한 우려때문에 낮시간이 효과적인 순찰시간대라고 여기는 것 같다. 반면에 밤시간대는 대도시(61.6%), 중소도시(49.6%), 농어촌(41.9%)의 순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새벽은 중소도시(36.5%), 대도시 (21.4%), 농어촌(6.7%)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규모에 따라 방범순찰의 효과적인 시간대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이상에서 도시규모별로 방범순찰의 효과적인 시간대에 관한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알아 보았다. 〈表 3-15〉와 〈表 3-16〉에서 제시된 것처럼 경찰과 주민 모두 밤을 방범순찰의 효과적인 시간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새벽은 경찰이 35.7%, 주민이 25.7%로 나타나 주민에 비해 경찰이 새벽시간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저녁은 경찰이 5.1%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주민들은 15.1%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112巡察車 運用

1990년부터 대도시지역 각 파출소에 112순찰차[7]가 배치되어 순찰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범죄예방 및 범죄진압에 신속히 대처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112巡察車의 犯罪豫防效果

관내사정에 따라 순찰차가 기동성을 발휘못하는 파출소도 있지만, 순찰차가 가져다 주는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나 골목길에 자주 등장하는 視覺的 效果, 事件現場에 迅速히 出動하는 效果 등으로 범죄예방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表 3-17〉에서와 같이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매우 크다'라고 75.7%가 응답하였으며 18.4%는 '조금 있다'고 응답하여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7) 治安本部에서는 1990년 11월 2일부터 그동안 C3車, 防犯機動巡察車로 불리워지던 용어를 112巡察車로 통일하였다. 여기에서 C3란 指揮(command), 統制(control), 通信(communication)의 약자로서 警察 C3體制는 事件發生時 市民의 犯罪申告電話인 112申告에 卽時 對應하기 위하여 地域的으로 分散되어 있는 모든 警察資源을 일시에 犯罪現場에 集結할 수 있도록 自動化된 指揮.統制.通信시스템을 統合.體系化한 것을 말한다.

있다. 이는 112순찰제도의 정착화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우선 대도시의 경우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0%이며 중소도시는 97.7%, 농어촌은 96.1%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대도시보다는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表 3-12〉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表 3-17〉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범죄예방효과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250(72.0)	198(76.2)	70(90.9)	518(75.7)
조 금 있 다	66(19.0)	56(21.5)	4(5.2)	126(18.4)
그 저 그 렇 다	18(5.2)	4(1.5)	3(3.9)	25(3.7)
거 의 없 다	7(2.0)	2(0.8)	0	9(1.3)
전 혀 없 다	6(1.7)	0	0	6(0.9)
계	347(50.7)	260(38.0)	77(11.3)	684(100.0)

(X^2=25.88 자유도=8 P<.005)

다음으로 〈表 3-18〉은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7.7%이며 중소도시는 70.3%, 농어촌은 71.2%로 응답하여 〈表 3-13〉과 같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이 대도시보다는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가 7.8%, 중소도시가 9.9%, 농어촌이 19.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이 대도시보다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주민이 많은 것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112순찰차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表 3－18〉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범죄예방효과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73(31.9)	60(22.1)	26(25.0)	159(26.3)
조 금 있 다	82(35.8)	131(48.2)	48(46.2)	261(43.1)
그 저 그 렇 다	56(24.5)	54(19.9)	10(9.6)	120(19.8)
거 의 없 다	17(7.4)	24(8.8)	11(10.6)	52(8.6)
전 혀 없 다	1(0.4)	3(1.1)	9(8.7)	13(2.1)
계	229(37.9)	272(45.0)	104(17.2)	605(100.0)

($X^2=43.09$ 자유도=8 $p< .001$)

이상에서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종합하면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는 경찰이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민이 112순찰제도에 대해서 경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112순찰제도의 홍보 부족도 한가지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 제도상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2犯罪申告의 脆弱要因을 보더라도 市民들의 不便申告 대부분이 派出所로 接受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派出所란 개념은 내 이웃에 인접하여 있어 危急申告를 하게 되면 警察官이 빨리 달려 올 수가 있고 親切하여 個人的인 問題에 保安性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고가 국민들 생활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반면에 警察署, 警察廳하면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威壓感이 들어 이웃에 접해 있는 派出所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국민들의 오랜 惰性的 慣行이 社會底邊에 깔려 있는듯 하다.[8]

8) 박길환, "C3制度와 民生治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0과학수사세미나 자료집, 1990. 10, 54쪽.

2) 112巡察車 運營時 問題點

〈表 3-19〉 도시규모별 112순찰차 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근무계획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교통혼잡에 의한 출동시간 지연	172(50.1)	29(11.2)	11(14.9)	212(31.4)
골목길 등으로 인한 출동 불가능	46(13.4)	27(10.4)	12(16.2)	85(12.6)
무전기 불량으로 인한 송수신 곤란	15(4.4)	8(3.1)	4(5.4)	27(4.0)
지령약어의 복잡화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4(1.2)	4(1.5)	0	8(1.2)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기동력 약화	106(30.9)	191(73.7)	47(63.5)	344(50.9)
계	343(50.7)	259(38.3)	74(10.9)	676(100.0)

(X^2=138.53 자유도=8 p<. 001)

〈表 3-19〉는 112순찰차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찰의 견해를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대도시는 '교통이 혼잡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된다'가 50.1%,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기동력이 떨어진다'가 30.9%, '골목길 등이 많아 출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가 13.4%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는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기동력이 떨어진다'가 73.7%, '교통이 혼잡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된다'가 11.2%, '골목길 등이 많아 출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가 10.4%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은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기동력이 떨어진다' 63.5%, '골목길 등이 많아 출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16.2%, '교통이 혼잡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된다'가 14.9%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112순찰차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순찰차량의 노후화를 들 수 있으며 대도시는 교통의 혼잡으로 출동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3) 112巡察車의 機動性 效果

〈表 3-20〉은 "귀하의 파출소 관내사정(골목길, 고지대, 대로변 등)을 감안할 때 112순찰차의 기동성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내용을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우선 '기동성이 매우 크다', '기동성이 조금 있다'가 각각 49.9%, 31.4%로 순찰차가 기동성을 발휘한다는 견해가 높지만, '그저 그렇다'가 9.7%, '기동성 효과가 별로 없다', '기동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도 각각 6.0%, 2.9%의 응답율을 보여 순찰차의 기동성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112순찰차의 기동성 효과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6.1%이며 중소도시는 86.5%, 농어촌은 88.2%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112순찰차량의 기동성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지역에서는 112순찰차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表 3-20〉 도시규모별 112순찰차의 기동성 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기동성효과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141(40.8)	151(58.3)	48(63.2)	340(49.9)
조 금 있 다	12(35.3)	73(28.2)	19(25.0)	214(31.4)
그 저 그 렇 다	47(13.6)	12(4.6)	7(9.2)	66(9.7)
별 로 없 다	25(7.2)	14(5.4)	2(2.6)	41(6.0)
전 혀 없 다	11(3.2)	9(3.5)	0	20(2.9)
계	346(50.8)	259(38.0)	76(11.2)	681(100.0)

($X^2=32.89$ 자유도=8 $p<.001$)

4) 通信體制

순찰중인 112순찰차와 파출소간의 통신체제는 〈表 3-21〉과 같이 '아주 잘 된다', '잘 되는 편이다'가 각각 33.2%, 52.7%로서 원활한 통신협력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파출소와 112순찰차와의 통신관계가 잘 된다고 86.5%가 응답하였으며, 중소도시는 86.9%,

농어촌은 80.3%가 응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모두 통신관계가 원활함을 알 수 있다.

〈表 3-21〉 도시규모별 파출소와 112순찰차와의 통신관계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통신관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잘 된다	140(40.5)	73(28.1)	12(16.9)	225(33.2)
잘 되는 편이다	159(46.0)	153(58.8)	45(63.4)	357(52.7)
협조에 애로가 많다	30(8.7)	17(6.5)	10(14.1)	57(8.4)
연락 협조가 안됨	11(3.2)	8(3.1)	3(4.2)	22(3.2)
체계적이지 못함	6(1.7)	9(3.5)	1(1.4)	16(2.4)
계	346(51.1)	260(38.4)	71(10.5)	677(100.0)

($X^2=25.85$ 자유도=8 $p<.005$)

3. 諸調査業務

제조사업무란 경찰업무 수행상의 필요와 타 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각종 신원사항을 조사함을 말한다.

파출소 제조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은 〈表 3-22〉에서와 같이 '방범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많다', '제조사업무가 많다'에 각각 36.1%, 37.1%로 응답해 파출소의 제조사업무가 경찰고유업무인 방범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제조사업무가 방범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3.0%이며, '제조사 업무가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1%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당하다'와 '거의 없다'는 각각 30.5%, 8.4%가 응답하였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너무 많다'와 '많다'에 응답한 사람은 각각 51.5%, 34.4%이며 '적당하다'와 '거의 없다'고 한 응답자는 12.2%, 1.9%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제조사 업무가 너무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2.3%이며 '제조사 업무가 많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2.3%로 나타났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한 응답자와 '거의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각각 12.8%, 2.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 제조사업무가 상대적으로 적

다고 느끼고 있지만 파출소의 제조사업무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73.2%나 되고 있어 파출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3-22〉 도시규모별 파출소의 제조사업무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치안여건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너무 많다	79(23.0)	135(51.5)	33(42.3)	247(36.1)
많다	131(38.1)	90(34.4)	33(42.3)	254(37.1)
적당하다	105(30.5)	92(12.2)	10(12.8)	147(21.5)
거의 없다	29(8.4)	5(1.9)	2(2.6)	36(5.3)
계	344(50.3)	262(38.3)	78(11.4)	684(100.0)

($X^2=75.24$ 자유도=6 $p< .001$)

이처럼 派出所의 機能이 防犯과 巡察에 專從하지 못하는 것은 과다한 文書處理, 諸調査業務, 그리고 協助.協力業務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警察 固有業務인 防犯活動에 전념할 수 있도록 制度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4. 防犯活動에 대한 認識

1) 警察活動에 대한 認識

다음은 도시규모에 따른 경찰활동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表 3-23〉처럼 경찰관은 대도시(87.5%), 중소도시(81.4%), 농어촌(81.0%) 모두 범죄예방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다음으로는 범죄진압을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경찰의 활동 가운데 시위진압, 대간첩, 정보수집, 교통단속보다는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경찰의 주임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농어촌에서 교통단속이 경찰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8.9%(7명)로 범죄진압의 7.6%(6명)와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차량소통의 원활과 교통단속경찰관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 3-23〉 도시규모별 경찰이 중시하는 경찰활동 단위 : 명(%)

도시규모 / 범죄예방효과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범 죄 예 방	300(87.5)	214(81.4)	64(81.0)	578(84.4)
범 죄 진 압	29(8.5)	26(9.9)	6(7.6)	61(8.9)
시 위 진 압	2(0.6)	1(0.4)	0	3(0.4)
대 간 첩	1(0.3)	3(1.1)	1(1.3)	5(0.7)
정 보 수 집	6(1.7)	5(1.9)	1(1.3)	12(1.8)
교 통 단 속	5(1.5)	14(5.3)	7(8.9)	26(3.8)
계	343(50.1)	263(38.4)	79(11.5)	685(100.0)

(X^2=15.68 자유도=10 P<.1)

반면에 주민들의 경우 경찰활동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表 3-24〉에서와 같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예방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시규모별로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에 대하여 대도시는 각각 87.0%, 3.0%, 중소도시는 84.4%, 9.8%, 농어촌은 62.9%, 14.3%가 응답하였다. 이것은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범죄예방 못지않게 범죄진압도 중요한 경찰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사건해결이 안되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듯 하다.

〈表 3-24〉 도시규모별 주민이 중시하는 경찰활동 단위 : 명(%)

도시규모 / 범죄예방효과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범 죄 예 방	201(87.0)	232(84.4)	66(62.9)	499(81.7)
범 죄 진 압	7(3.0)	27(9.8)	15(14.3)	49(8.0)
시 위 진 압	1(0.4)	1(0.4)	2(1.9)	4(0.7)
대 간 첩	1(0.4)	2(0.7)	4(3.8)	7(1.1)
정 보 수 집	4(1.7)	7(2.5)	9(8.6)	20(3.3)
교 통 단 속	17(7.4)	6(2.2)	9(8.6)	32(5.2)
계	231(37.8)	275(45.0)	105(17.2)	611(100.0)

(X^2=50.25 자유도=10 p< .001)

2) 派出所의 重要業務

일선 파출소 업무중 실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순찰활동으로 나타났다. 〈表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출소 업무중 중요업무로서 '순찰활동'을 지적한 경찰관이 69.9%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사업무(11.0%), 공문처리업무(10.8%), 사건처리업무(6.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체경비업무나 시위진압동원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순찰업무(79.2%), 공문처리업무(13.0%) 순으로 파출소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며 중소도시는 순찰업무(62.0%), 제조사업무(20.2%), 사건처리업무와 공문처리업무 순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순찰업무(55.7%), 제조사업무(15.2%), 사건처리업무와 공문처리업무의 순으로 나타나 도시규모에 따라 파출소의 중요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고유업무 외에도 여전히 제조사업무나 공문처리업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나 중소도시 파출소는 여전히 불필요한 인원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5〉 **도시규모별 파출소 업무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범죄예방효과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순 찰	274(79.2)	163(62.0)	44(55.7)	481(69.9)
공 문 처 리	45(13.0)	20(7.6)	9(11.4)	74(10.8)
제 조 사	11(3.2)	53(20.2)	12(15.2)	76(11.0)
자 체 경 비	3(0.9)	4(1.5)	4(5.1)	11(1.6)
사 건 처 리	9(2.6)	22(8.4)	10(12.7)	41(6.0)
시위진압동원	4(1.2)	1(0.4)	0	5(0.7)
계	346(50.3)	263(38.2)	79(11.5)	688(100.0)

(X^2=77.39 자유도=10 P< .001)

3) 義警에 대한 認識

豫防治安과 犯罪對應을 위한 派出所의 基本的인 問題는 人力의 不足과 人力의 不均衡的 配分에 있다. 우선 人力面에서 전 警察官을 기준으로 1인당 擔當人口가 492명으로서 아직도 先進國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9] 治安一線이라고 할 수 있는 派出所의 外勤人力의 부족으로 파출소에 비정규경찰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表 3-26〉과 같이 전체 警察人力 156,298명중 正規警察이 90,356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非正規警察인 戰鬪警察과 義務警察이 57,634명으로 37%로 非正規警察이 전체 警察人力의 ⅓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專門的인 警察人力의 不足으로 效率的인 警察業務 遂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3-26〉 정규경찰과 비정규경찰 비교

총 계	정 규 경 찰	비 정 규 경 찰	
		전투경찰·의무경찰	일 반 직
156,298명(100%)	90,356명(58%)	57,634명(37%)	8,308명(5%)

※ 출처: 警察廳 資料(1995년 3월 31일 기준)

이와 같은 사실은 파출소에 배치된 의경이 파출소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경찰관과 주민의 인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경찰관은 대도시의 경우 의경의 방범활동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表 3-27〉에서와 같이 대도시 74.8%이며, 중소도시는 84.1%, 농어촌은 91.0%로 농어촌이 가장 높고 그 다음로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의경의 방범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1994년 2월 1일 현재 警察官 1인당 擔當人口는 프랑스 268명, 미국 348명, 영국 376명 등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

〈表 3-27〉 도시규모별 의경의 방범활동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의경의 협조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많은 도움이 된다	134(39.0)	158(61.2)	49(62.8)	341(50.1)
약간 도움이 된다	123(35.8)	59(22.9)	22(28.2)	204(30.0)
그저 그렇다	32(9.3)	15(5.8)	6(7.7)	53(7.8)
별로 도움이 안된다	47(13.7)	19(7.4)	0	66(9.7)
전혀 도움이 안된다	8(2.3)	7(2.7)	1(1.3)	16(2.4)
계	344(50.6)	258(37.9)	78(11.5)	680(100.0)

(X^2=43.09 자유도=8 p< .001)

또한 〈表 3-28〉에서 주민들도 대도시의 경우 의경의 방범활동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5.8%이며 중소도시는 65.2%, 농어촌은 58.1%로 중소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어촌, 대도시의 순으로 의경의 방범활동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그저 그렇다'라는 소극적 의견에 19.9%,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은 19.7%에 달하고 있다.

〈表 3-28〉 도시규모별 의경의 방범활동에 관한 주민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의경의 협조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많은 도움이 된다	44(19.0)	68(24.9)	21(20.0)	133(21.8)
약간 도움이 된다	85(36.8)	110(40.3)	40(38.1)	235(38.6)
그저 그렇다	51(22.1)	45(16.5)	25(23.8)	121(19.9)
별로 도움이 안된다	42(18.2)	40(14.7)	13(12.4)	95(15.6)
전혀 도움이 안된다	9(3.9)	10(3.7)	6(5.7)	25(4.1)
계	231(37.9)	273(44.8)	105(17.2)	609(100.0)

(X^2=8.19 자유도=8 p< .5)

그러나 〈表 3-27〉과 〈表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보다는 경찰이 의경의 방범활동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정규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의경이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경찰이 의경의 방범활동에 대해 주민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의경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찰관들은 〈表 3-29〉에서와 같이 방범활동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사명감의 결여(38.7%)와 경험부족(21.8%)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이처럼 의경의 사명감 결여와 경험부족은 방범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 3-29〉 도시규모별 의경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근무교대제의 개선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사명감의 결여	69(40.8)	32(35.6)	9(36.0)	110(38.7)
경험부족	32(18.9)	25(27.8)	5(20.0)	62(21.8)
지시 및 명령이행자세 결여	25(14.8)	17(18.9)	5(20.0)	47(16.5)
대민봉사의식 결여	19(11.2)	4(4.4)	3(12.0)	26(9.2)
법률 및 규정지식 결여	6(3.6)	5(5.6)	3(12.0)	14(4.9)
기 타	18(10.7)	7(7.8)	0	25(8.8)
계	169(59.5)	90(31.7)	25(8.8)	284(100.0)

(X^2=12.84 자유도=10 p< .5)

軍隊式 命令體系로 움직이는 이들 戰.義警들이 第5共和國 이후 극심해진 反政府 또는 勞使紛糾 등 集團示威鎭壓에는 效果的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의경들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사람들로서 원칙적으로 경찰이라고 볼 수 없다. 의경들이 일선 파출소에서 대민관계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경찰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많으므로 의경들의 역할을 정규경찰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防犯隊員에 대한 認識

파출소에 배치된 방범대원이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은 〈表 3-30〉에서와 같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의 긍정적인 의견에 10.5%, 27.2%의 경찰관이 동의하였고, '그저 그렇다'라는 소극적인 의견에는 15.8%,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에 25.0%, 21.5%로 46.5%의 경찰관이 방범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0%이며 중소도시는 46.2%, 농어촌은 56.9%로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30〉 도시규모별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견해단위 : 명(%)

도시규모 / 방범대원의 협조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많은 도움이 된다.	17(5.0)	34(13.7)	18(27.7)	69(10.5)
약간 도움이 된다	79(23.0)	81(32.5)	19(29.2)	179(27.2)
그저 그렇다	56(16.3)	36(14.5)	12(18.5)	104(15.8)
별로 도움이 안된다	94(27.4)	60(24.1)	10(15.4)	164(25.0)
전혀 도움이 안된다	97(28.3)	38(15.3)	6(9.2)	141(21.5)
계	343(52.2)	249(37.9)	65(9.9)	657(100.0)

(X^2=55.91 자유도=8 p< .001)

방범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찰관들은 〈表 3-31〉에서와 같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로 63.5%가 사명감의 결여라고 응답하였으며, 상사의 지시 및 명령이행자세의 결여는 13.4%가 응답하였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사명감의 결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각각 64.8%, 59.6%, 70.3%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지시 및 명령이행자세의 결여는 각각 14.4%, 12.3%, 10.8%로 나타났다.

〈表 3-31〉 도시규모별 방범대원의 문제점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이유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사명감의 결여	171(64.8)	87(59.6)	26(70.3)	284(63.5)
경험부족	10(3.8)	14(9.6)	0	24(5.4)
지시 및 명령이행자세 결여	38(14.4)	18(12.3)	4(10.8)	60(13.4)
대민봉사의식 결여	16(6.1)	8(5.5)	2(5.4)	26(5.8)
법률 및 규정지식 결여	9(3.4)	8(5.5)	5(13.5)	22(4.9)
기 타	20(7.6)	11(7.5)	0	31(6.9)
계	264(59.1)	146(32.7)	37(8.3)	447(100.0)

(X^2=18.98 자유도=10 p<.05)

防犯隊員들은 현재 地方雇傭職인 市廳 및 區廳 소속으로 警察의 指揮.監督下에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10] 그러나 방범대원들은 採用·豫算部署와 監督·運營部署가 서로 다른 관계로 業務의 效率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警察防犯活動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義警과 함께 하루빨리 廢止되어야 할 것이다.

5) 區域責任 巡察制度에 대한 認識

〈表 3-32〉 도시규모별 구역책임순찰제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구역책임순찰제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적합하다	45(13.0)	14(5.3)	5(6.3)	64(9.3)
적합하다	142(40.9)	110(42.0)	33(41.8)	285(41.4)
그저 그렇다	77(22.2)	82(31.3)	30(38.0)	189(27.5)
부적합하다	57(16.4)	44(16.8)	8(10.1)	109(15.8)
아주 부적합하다	26(7.5)	12(4.6)	3(3.8)	41(6.0)
계	347(50.4)	262(38.1)	79(11.5)	688(100.0)

(X^2=22.99 자유도=8 p<.005)

10) 防犯隊員制度는 1953년 11월 당시 共匪討伐로 인한 治安空白을 보충하기 위하여 里.洞單位 住民夜警隊가 발족되어 주민들이 윤번제 防犯巡察을 하게 된 것을 시발로 하여 1962년부터는 有給防犯員制로 바뀌었다가 1989년 3월 1일 地方雇傭職公務員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警察大學, 前揭書, 16쪽.

〈表 3-32〉는 현재의 구역책임 순찰제도[11]가 현실적으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3.9%이며, 중소도시는 47.3%, 농어촌은 48.1%가 응답하였고,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의 경우 23.9%, 중소도시는 21.4%, 농어촌은 13.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50.7%가 현재의 구역책임 순찰제도에 대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그저 그렇다'라는 소극적인 의견에는 27.5%, '부적합하다', '아주 부적합하다'에 각각 15.8%, 6.0%로 21.8%의 경찰관들이 구역책임 순찰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역책임 순찰제도에 대해 약 절반 정도의 경찰관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使命感이 결여된 職員의 統制問題와 형식적인 순찰우려 때문에 현재의 治安人力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6) 警察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

警察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에 대한 住民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表 3-33〉에서와 같이 방범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2.0%이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2%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59.9%, 중소도시가 64.0%, 농어촌이 61.0%로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表 3-33〉 도시규모별 경찰방범활동의 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범죄예방효과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64(27.6)	68(24.7)	22(21.0)	154(25.2)
조 금 있 다	75(32.3)	108(39.3)	42(40.0)	225(36.8)
그 저 그 렇 다	50(21.6)	48(17.5)	19(18.1)	117(19.1)
거 의 없 다	27(11.6)	35(12.7)	15(14.3)	77(12.6)
전 혀 없 다	2(0.9)	7(2.5)	1(1.0)	10(1.6)
잘 모 르 겠 다	14(6.0)	9(3.3)	6(5.7)	29(4.7)
계	232(37.9)	275(44.9)	105(17.2)	612(100.0)

(X^2=9.72 자유도=10 p< .5)

11) 警察廳長 指揮指示 第1號(自律巡察施行 強調指示)로 1995년 3월 15일부터 施行하고 있는 區域(自律)責任 巡察制度란 勤務者 개개인이 擔當區域을 自律的으로 巡察하는 制度를 말한다.

7) 派出所中心 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

〈表 3-34〉은 "현재의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내용을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도시규모에 따른 파출소의 범죄예방효과는 대도시의 경우 '매우 크다'가 51.2%, '조금 있다'가 31.2%이며 중소도시는 각각 35.0%, 44.1%이고 농어촌은 각각 38.0%, 32.9%로 나타났다. 따라서 파출소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하여 대도시 경찰관의 82.4%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소도시의 79.1%, 농어촌의 70.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3-34〉 도시규모별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범죄예방효과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177(51.2)	92(35.0)	30(38.0)	299(43.5)
조 금 있 다	108(31.2)	116(44.1)	26(32.9)	250(36.3)
그 저 그 렇 다	46(13.3)	42(16.0)	13(16.5)	101(14.7)
거 의 없 다	8(2.3)	10(3.8)	6(7.6)	24(3.5)
전 혀 없 다	4(1.2)	1(0.4)	0	5(0.7)
잘 모 르 겠 다	3(0.9)	2(0.8)	4(5.1)	9(1.3)
계	346(50.3)	263(38.2)	79(11.5)	688(100.0)

($X^2=34.44$ 자유도=10 $P< .001$)

반면에 〈表 3-35〉는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이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도시규모에 따른 파출소의 범죄예방효과는 대도시의 경우 '매우 크다'가 27.6%, '조금 있다'가 40.1%이며 중소도시는 각각 29.1%, 38.2%이고 농어촌은 각각 28.6%, 33.3%로 나타나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 정도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대도시 9.9%, 중소도시 8.7%, 농어촌 16.2%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이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35〉 도시규모별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명(%)

범죄예방효과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매 우 크 다	64(27.6)	80(29.1)	30(28.6)	174(28.4)
조 금 있 다	93(40.1)	105(38.2)	35(33.3)	233(38.1)
그 저 그 렇 다	43(18.5)	62(22.5)	18(17.1)	123(20.1)
거 의 없 다	19(8.2)	18(6.5)	17(16.2)	54(8.8)
전 혀 없 다	4(1.7)	6(2.2)	0	10(1.6)
잘 모 르 겠 다	9(3.9)	4(1.5)	5(4.8)	18(2.9)
계	232(37.9)	275(44.9)	105(17.2)	612(100.0)

(X^2=16.88 자유도=10 P<.1)

이상에서 도시규모별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경찰은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 '매우 크다' 43.5%, '조금 있다'에 36.3%로 79.8%가 응답한 반면에 주민의 경우에는 '매우 크다'에 28.4%, '조금 있다'에 38.1%로 66.5%가 응답하여 주민에 비해 경찰이 파출소중심 방범활동의 범죄예방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현 체제의 변화에 따른 불안심리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요인인 것 같다.

8) 派出所나 警察署의 職制改編의 選好度

〈表 3-36〉은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도시규모에 따라 교차분석한 것이다. 〈表 3-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85.7%의 응답자가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조사대상 경찰관 대부분이 직제개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서는 83.1%가, 중소도시는 90.0%, 농어촌은 82.2%가 현재의 경찰서와 파출소의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농어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表 3-36〉 도시규모별 경찰서와 파출소의 직제개편에 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근무시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과중하다	116(33.7)	91(34.7)	28(35.4)	235(34.3)
2교대라면 괜찮다	170(49.4)	145(55.3)	37(46.8)	352(51.4)
많은 편이다	36(10.5)	16(6.1)	11(13.9)	63(9.2)
적절하다	21(6.1)	10(3.8)	3(3.8)	34(5.0)
모르겠다	1(0.3)	0	0	1(0.1)
계	344(50.2)	262(38.2)	79(11.5)	685(100.0)

(X^2=9.50 자유도=8 p<.5)

5. 住民과의 協助

1) 住民協助

〈表 3-37〉에서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대도시의 경우 주민이 '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24.9%이며 '비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7.2%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6.9%이며, '비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41.9%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의 경우에는 각각 42.3%, 38.5%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농어촌이 방범활동에 있어 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31.4%의 경찰관만이 경찰업무에 협조적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냉담한 편이다', '아주 비협조적이다'에 39.2%, 10.2%의 경찰관들이 응답하여 주민들이 경찰 방범활동에 대하여 대체로 냉담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37〉 도시규모별 방범활동에 있어 주민협조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협조정도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협조적이다	13(3.8)	4(1.6)	4(5.1)	21(3.1)
비교적 협조적이다	73(21.1)	90(35.3)	29(37.2)	192(28.3)
중립적이다	62(17.9)	54(21.2)	15(19.2)	131(19.3)
냉담한 편이다	152(43.9)	86(33.7)	28(35.9)	266(39.2)
아주 비협조적이다	46(13.3)	21(8.2)	2(2.6)	69(10.2)
계	346(51.0)	255(37.6)	78(11.5)	679(100.0)

($X^2=30.04$ 자유도=8 $p< .001$)

다음으로 주민들에게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자신의 협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表 3-38〉과 같다. '아주 협조적이다'와 '비교적 협조적이다'에 각각 13.1%, 44.7%로 57.8%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반면에 '냉담한 편이다'와 '아주 비협조적이다'에 각각 12.3%, 2.5%로 14.8%의 주민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자신이 '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49.1%이며 '비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5.8%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66.5%이며, '비협조적이다'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11.2%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은 각각 53.8%, 22.1%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순으로 자신이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우 근린관계의 와해 등으로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경찰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듯 하다.

이상을 종합해서 방범활동에 있어 주민협조에 대하여 경찰과 주민의 견해를 살펴보면, 경찰은 주민의 협조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주민은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해 협조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57.8%에 달하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적극적으로 경찰업무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表 3-38〉 도시규모별 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주민 자신의 협조정도 단위:명(%)

협조정도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협조적이다	16(7.2)	52(19.3)	10(9.6)	78(13.1)
비교적 협조적이다	93(41.9)	127(47.2)	46(44.2)	266(44.7)
중립적이다	78(35.1)	60(22.3)	25(24.0)	163(27.4)
냉담한 편이다	30(13.5)	25(9.3)	18(17.3)	73(12.3)
아주 비협조적이다	5(2.3)	5(1.9)	5(4.8)	15(2.5)
계	222(37.3)	269(45.2)	104(17.5)	595(100.0)

($X^2=30.48$ 자유도=8 $p< .001$)

한편 주민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찰관들은 〈表 3-39〉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경찰관들은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45.5%), '방범활동과 단속에 관한 이해의 부족'(31.9%),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고 하여'(20.8%)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협조하는 방법을 몰라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비율이 1.8%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表 3-39〉 도시규모별 주민의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 : 명(%)

이유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경찰의 일이다	107(42.1)	76(49.7)	22(50.0)	205(45.5)
이해부족	89(35.0)	43(28.1)	12(27.3)	144(31.9)
부담은 크나 혜택이 적다	57(22.4)	29(19.0)	8(18.2)	94(20.8)
협조방법을 몰라서	1(0.4)	5(3.3)	2(4.5)	8(1.8)
계	254(56.3)	153(33.9)	44(9.8)	451(100.0)

($X^2=10.47$ 자유도=6 $p<.5$)

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보면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42.1%, 49.7%,

50.0%로 나타났고, '방범활동과 단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35.0%, 28.1%, 27.3%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22.4%, 19.0%, 18.2%로 나타나 도시규모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表 3-40〉에서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해 주민 자신이 비협조적인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은 '방범활동과 단속에 관한 이해의 부족'(40.7%),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27.8%), '협조방법을 몰라서'(17.4%),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1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협조에 따른 부담 때문에 방범활동에 대한 협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과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각각 17.4%, 9.8%, 15.8%로 나타났고, '방범활동과 단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8.0%, 47.8%, 33.3%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5.0%, 25.0%, 36.8%로 나타났으며 '협조방법을 몰라서 협조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9.6%, 17.4%, 14.0%로 나타났다.

〈表 3-40〉 도시규모별 주민의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한 주민자신의 견해 단위:명(%)

도시규모 / 이유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경찰의 일이다	16(17.4)	9(9.8)	9(15.8)	34(14.1)
이해부족	35(38.0)	44(47.8)	19(33.3)	98(40.7)
부담은 크나 혜택이 적다	23(25.0)	23(25.0)	21(36.8)	67(27.8)
협조방법을 몰라서	18(19.6)	16(17.4)	8(14.0)	42(17.4)
계	92(38.2)	92(38.2)	57(23.7)	241(100.0)

(X^2=6.92 자유도=6 p< .5)

이상에서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경찰과 주민 자신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경찰은 주민이 비협조적인 이유를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생각한 사람이 45.5%이지만 주민은 14.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협조방법을 몰라서'에 대해서도 경찰은 1.8%가 응답하였지만 주민은 17.4%가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방범활동과 단속에 대한 이해부족은 경찰이 31.9%, 주민은 40.7%가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자신의 책임감 때문에 방범활동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자가 많아 다행이긴 하지만 경찰관과는 달리 주민들은 방범활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특히 협조방법을 몰라서 방범활동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 경찰업무에 대한 주민홍보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請願警察과 用役警備業體職員과의 協助

경찰이 방범활동에 있어서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업체직원과의 업무협조를 보면 〈表 3-41〉에서와 같이 '아주 잘 된다', '잘 되는 편이다'에 각각 2.1%, 13.4%의 응답율을 보였고, '협조가 별로 안된다', '협조가 전혀 안된다'에 34.4%, 22.6%가 응답하여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업체직원과 협조체제가 대체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 15.8%가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8.7%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13.6%가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57.6%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20.5%가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고, 46.5%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업체의 직원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지 못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1〉 도시규모별 청원경찰/용역경비업체직원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경찰의 견해 단위:명(%)

협조정도 \ 도시규모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아주 협조적이다	11(3.2)	1(0.4)	2(2.7)	14(2.1)
비교적 협조적이다	44(12.6)	34(13.2)	13(17.8)	91(13.4)
중립적이다	89(25.6)	74(28.8)	24(32.9)	187(27.6)
냉담한 편이다	122(35.1)	86(33.5)	25(34.2)	233(34.4)
아주 비협조적이다	82(23.6)	62(24.1)	9(12.3)	153(22.6)
계	348(51.3)	257(37.9)	73(10.8)	678(100.0)

($X^2=12.21$ 자유도=8 $p< .5$)

第 4 章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善方案

第 1 節 分析結果의 要約 및 論議

研究目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治安與件의 差異를 밝혀, 防犯活動體制의 改善方案을 導出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大都市.中小都市 및 農漁村 등 都市規模別 現行 治安與件과 防犯活動의 實態를 警察官 住民 각각 700명을 대상으로 設問調査하여 分析해 본 결과들을 要約.整理하고 效果的인 防犯活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住民들은 자신이 居住하는 地域의 治安與件이 良好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0.3%에 불과하여 여전히 不安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農漁村地域보다 大都市나 中小都市 住民들이 더 不安해 하고 있으며 治安與件에 대하여 無關心한 態度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安全한 治安與件을 造成하기 위한 防犯活動體制의 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派出所 勤務에 대한 警察官의 認識을 살펴보면

① 派出所의 勤務計劃에 대해서는 59.1%가 形式的이고 職員의 勤務能力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農漁村보다 中小都市나 大都市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派出所職員들은 현행 2부제 勤務交代制(직원들을 2개조로 나누어 1일 24시간 근무, 1일 비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大都市 警察官들의 88.3%가 현행 交代制의 改善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현행 交代制의 改善을 바라는 76.3%의 警察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부제(일근, 당번, 비번)나 3교대제(1일 8시간씩 3교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③ 현재의 勤務時間에 대하여 대부분의 警察官(70.3%)이 勤務時間이 많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都市規模別로는 大都市 82.8%, 中小都市 60.2%, 農漁村 48.7%로 특히 大都市 警察官들의 勤務時間이 매우 過重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警察官들은 所內 및 待期勤務時間에도 休息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事件取扱 및 處理를 하거나 잡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大都市 警察官들은 中小都市나 農漁村 警察에 비해 청소나 비치부책 정리에도 거의 30%에 가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⑤ 巡察 및 防犯團束 등의 勤務를 極大化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派出所 1人 勤務制度에 대해서도 85.6%의 警察官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의 순으로 派出所에 1人이 勤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警察 巡察活動에 대한 警察官과 住民들의 認識을 살펴보면

① 犯罪脆弱地域에 대해서 巡察活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31.5%의 住民이 응답하고 있고, 住民의 30.4%가 警察의 巡察活動을 目擊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犯罪死角地帶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결과 可視的인 犯罪豫防效果도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效果的인 巡察方法으로는 警察과 住民 모두가 112巡察車에 의한 巡察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都市規模別로는 大都市의 경우는 徒步巡察이 效果的인데 반해 農漁村이나 中小都市의 경우는 112巡察車에 의한 巡察이 效果的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 地域에 시급히 112巡察車를 配置.完了하여야 할 것이다.

③ 效果的인 巡察時間帶에 대하여 警察과 住民 모두 밤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都市規模別로 보면 낮시간이 效果的인 巡察時間帶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警察官은 大都市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住民들은 農漁村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農漁村의 경우 家族이 일하러 나간 후 빈집털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여겨진다.

4. 112巡察車輛에 대한 警察官과 市民의 認識을 살펴보면

① 112巡察車에 의한 巡察의 犯罪豫防效果에 대해 住民보다 警察이 더 效果

的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住民들이 아직도 犯罪나 不便申告를 派出所에 하고 있어 巡察制度의 弘報不足도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112巡察車 運營時 가장 큰 問題點으로 警察官들은 中小都市나 農漁村의 경우 巡察車輛의 老朽化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반해 大都市地域은 交通混雜으로 인한 出動時間의 遲延을 들고 있다. 따라서 老朽한 巡察車輛의 交替가 필요하고 交通混雜地域에서도 出動이 가능한 車輛의 개발이 요망된다.

③ 警察官들은 112巡察車의 機動性 效果에 대해서도 中小都市나 農漁村地域에 비해 大都市地域은 問題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 地域에서도 112巡察車輛이 機動性을 발휘할 수 있도록 112巡察制度에 대한 效果的인 運營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④ 派出所와 巡察중인 巡察車와의 通信體制는 大都市.中小都市 및 農漁村地域에서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5. 大都市는 中小都市나 農漁村에 비해 상대적으로 諸調査業務가 적다고 警察官들이 응답하고 있기는 하지만 派出所에서 처리하는 警察固有業務인 防犯活動業務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諸調査業務나 公文處理業務가 많다고 응답하고 있어 防犯活動에 전념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6. 防犯活動에 대한 警察官과 住民의 認識을 살펴보면

① 警察官과 住民 모두 犯罪豫防을 가장 중요한 警察業務로 보고 있으며, 農漁村地域의 경우 中小都市나 大都市에 비해 交通團束과 犯罪鎭壓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警察業務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農漁村地域의 경우 車輛疏通은 원활한데 비해 交通事故處理 專門要員이나 團束 警察官의 不足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犯罪가 발생하더라도 事件解決이 迅速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警察官들은 大都市.中小都市 및 農漁村地域 모두 巡察을 派出所의 重要한 業務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警察 固有業務인 巡察 외에도 諸調査業務나 公文處理

業務가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都市나 中小都市 派出所는 여전히 不必要한 人力動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③ 義警의 防犯活動에 대해 住民보다는 警察이 肯定的으로 認識하고 있으나 이는 正規警察人力의 不足으로 警察業務를 義警이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 있다는 現實的인 理由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大都市(74.8%)나 中小都市(84.1%)보다 農漁村地域 警察(91.0%)이 더 肯定的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大都市나 中小都市의 경우 專門的인 警察業務處理에 義警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農漁村地域의 경우 특히 人力이 절대적으로 不足한데 비해 農漁村地域 警察業務가 대부분 單純業務가 많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義警制度에 대해 否定的으로 보는 警察官들 대부분이 義警의 使命感 缺如와 經驗不足을 들고 있어 一線 派出所에서 警察官이 對民關係活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警察의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否定的인 영향을 줄 우려가 많으므로 正規警察人力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④ 派出所에 配置된 防犯隊員에 대한 警察官들의 認識도 消極的이거나 否定的인데 이는 使命感의 缺如와 上司의 指示 및 命令履行姿勢의 缺如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地方雇傭職 公務員으로 되어 있는 防犯隊員들은 採用.豫算部署와 運營.監督部署가 서로 다르고 業務의 效率도 떨어뜨리고 있어 義警과 함께 하루빨리 正規警察人力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⑤ 警察廳長 指揮指示 第1號(自律巡察施行 強調指示)로 1995년 3월 15일부터 勤務者 개개인이 擔當區域을 自律的으로 巡察하는 區域(自律)責任 巡察制度에 대해서 약 절반 정도의 경찰관이 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使命感이 결여된

1) 派出所는 企劃部署가 아니라 警察의 最一線官署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公文을 통해 上級官署의 여러가지 業務를 處理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公文에 [派出所 자체 계획 수립.시행 후 보고할 것]이라는 指示公文을 下達하고 있는 것은 本署 각 該當部署의 責任轉嫁式 行政의 標本이라고 생각하는 警察官들이 많았다. 또한 공문하단 말미에 부가하는 [엄중 문책위계임]이라는 협박성 용어는 경찰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相互不信을 유발하는 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職員의 統制問題와 形式的인 巡察이 될 우려가 있고, 현재의 治安人力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⑥ 警察 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에 대해 62.0%의 住民들이 效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現行 派出所中心 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에 대해서도 79.8%의 警察官과 66.5%의 주민들이 肯定的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現 體制의 變化에 따른 不安心理도 肯定的인 認識을 하게 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다만 關心을 두어야 할 것은 現在의 派出所中心 防犯活動의 犯罪豫防效果에 대해 大都市나 中小都市에 비해 農漁村地域 警察이 다소 否定的으로 생각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단위파출소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겠다.

⑦ 效果的인 防犯活動을 위해 警察署나 派出所의 職制改編에 대해 85.7%의 警察이 이를 選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警察署나 派出所制度의 改革에 대해서도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硏究에서는 그 한가지 方案으로서 第3節에서 地區警察署槪念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7. 住民과의 協助에 대해서 警察官과 住民의 認識을 살펴보면

① 防犯活動에 대한 住民의 協助에 대해서 警察과 住民의 認識을 보면 31.4%의 警察官이 協助的이라고 생각한 반면 住民들은 57.8%가 協助的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住民들의 肯定的인 認識을 警察業務에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警察業務에 非協助的이라고 응답한 警察官과 住民의 認識을 보면 警察官들은 자신의 責任感 때문에 防犯活動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있는 者(45.5%)가 많아 다행이긴 하지만 警察官과는 달리 住民들은 防犯活動에 대한 理解不足(40.7%)과 특히 協助方法을 몰라서(17.4%) 防犯活動에 協助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 警察業務에 대해서 住民들에게 弘報活動을 活性化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② 防犯活動에 있어서 請願警察職員이나 用役警備業體職員과의 業務協助에 대한 警察官의 認識을 보면 肯定的인 評價(15.5%)보다는 否定的인 評價(57.0%)를 하는 警察官이 많았다. 그러나 用役警備(私警備)란 본질적으로 受益者負擔의

原則에 따라서 自律的으로 推進되는 防犯活動으로서[2] 이러한 用役警備는 활동의 성격상 警察力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保護와 奉仕機能을 보완해 주는 성격이 강하여 그 나름대로의 價値가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警察과의 協力을 통하여 犯罪의 豫防과 治安의 維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장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를 積極的으로 育成하기 위한 雰圍氣의 造成이 필요하고 이에 수반하여 請願警察法에 의한 請願警察과 用役警備業法에 의한 用役警備員 身分의 一元化는 물론 警備業務의 專門化와 警備員의 資質向上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徹底한 指導와 監督方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第 2 節 地方化時代에 對備한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善方向

1. 理想的인 警察防犯活動體制의 前提條件

地方化時代의 개막과 함께 地域住民들에게 良質의 治安서비스를 제공하여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第2章 治安與件의 分析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地方化時代와 맞물리고 주민의 생활 수준이 선진국형에 도달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찰의 치안서비스 중에서 주민의 경찰기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분출하는 반면 無秩序와 犯罪行爲 역시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地域社會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면서 지역주민 위주의 치안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적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경찰업무 중 防犯活動 분야 역시 이제까지의 國民保護라는 국가정부시대에서 住民保護라는 지방정부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변화를 시도하여야 하는 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地方的 特性과 地方의 與件에 맞는 防犯活

2) 김보환 전대양, "우리나라 방범체제의 개선방향," 민생치안연구소, 민생치안, 통권 제4호 (1992. 9), 37쪽.

動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理想的인 防犯活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豫防治安과 犯罪對應을 위한 外勤警察力의 부족을 보충해서 경찰관들이 격무에 시달림이 없이 效率的인 防犯活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3]

둘째 현재의 2부제 근무여건을 3부제 근무로 개선시켜 외근경찰관들이 사명감과 명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4]

셋째 警察裝備의 科學化가 필요하다. 현재의 경찰방범활동은 장비의 절대적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老朽化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서 단위는 본연의 民生治安業務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는 바, 地方警察廳別로 專門示威鎭壓警察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과 行政能率 향상을 위해서 諸調査業務나 他部處 協助業務를 대폭 축소하여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地域社會中心의 警察活動(community policing)에 대한 경찰관들의 自發的 參與와 理解를 위한 교육과 의식개혁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2. 새로운 警察防犯活動體制의 導入에 따른 豫想效果

1) 勤務環境面

첫째 새로운 防犯活動體制는 大都市의 경우 2부제에서 3부제로 근무방법이 바뀌어짐에 따라 경찰관들이 心理的.肉體的으로 안정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3)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전국 경찰관의 숫자는 90,356명이고, 이중에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35,011명으로 나타나 있다.

4)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교대 파출소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2시간(전국1,624개소로 전체 파출소의 48%)이고 전일제 파출소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6시간(전국 1,784개소로 전체 파출소의 52%)이 된다.

수 있으며 士氣問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地域社會中心的 警察活動을 하게 됨으로써 警察 防犯活動은 현재의 防犯活動體制에 비해 分權化되고 自律的이기 때문에 自律性을 부여받은 警察官들은 그만큼 責任感이 무거워지고 勤務意慾도 커지게 될 것이다.

2) 防犯活動面

첫째 새롭게 제시된 警察防犯活動體制는 地區警察署 管轄區域이 현재의 경찰서보다 작아짐으로써 경찰관들이 담당구역에 정통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밀착된 犯罪豫防活動을 할 수 있다.

둘째 大都市의 경우 기존의 파출소가 없어지고 대부분의 警察力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함에 따라 現場 위주의 차량, 도보, 오토바이순찰을 戰略的.集中的으로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셋째 농어촌지역의 大單位 派出所의 경우 현재의 파출소와는 달리 大單位 派出所長의 책임하에 管轄區域의 地域的·環境的 特性에 맞는 경찰운영을 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警察防犯活動體制는 地區警察署長의 책임하에 시간대별 또는 계절별 특성에 따라 戰略的으로 기동성있게 防犯需要에 대처할 수 있다.

다섯째 地域社會指向的 防犯活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112巡察車에 의한 순찰, 도보순찰, 자전거와 오토바이순찰 및 지역사회담당 경찰관들의 활동으로 입체적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방범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地域社會關係面

첫째 새로운 警察防犯活動體制는 地域社會中心의 警察戰略을 채택함으로써 차량순찰과 도보순찰, 지역사회담당 경찰관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재조직화, 주민의 자문역할 수행, 시민교육, 정보수집, 긴급요청에 대한 봉사, 주민과의 긴밀한 접촉 등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줌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파출소를 지역사회담당 경찰관들의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 폐쇄에 다른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문제는 지역주민과 경찰기관이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인식하에 지역주민들의 치안행정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찰과 지역사회가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기존의 체제보다 민생치안에 관련된 문제에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쉬울 것이다.

第 3 節 地域的 特性에 따른 警察防犯活動體制의 改編

1. 大都市의 경우

1) 警察署 단위의 防犯活動體制로 轉換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경찰기관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일부분으로서의 경찰이 호흡하고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사회중심적 경찰활동을 위주로 하되 경찰조직을 재조직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기존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 1개 경찰서당 500~600명의 경찰력으로 넓은 관할구역과 많은 주민을 상대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의 대도시 파출소의 경우 10~15명의 직원으로 갑부와 을부의 2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번자, 소내근무자, 112탑승자를 제외하고나면 1~2명의 직원이 근무에 임해야 하는 모순적인 환경하에서는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분출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경찰조직 역시 점점 주민과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선경찰관들이 경찰본연의 임무인 순찰기능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체제를 확립해 보자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서 방범조직은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 위주로 방범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제반조사 및 행정협조업무 등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재조직화해서 지구경찰서 중심으로 경찰서조직을 개편하여 지역사회중심으로 경찰전략을 세우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는 경찰서 중심의 방범체제로 개편하여 地域社會中心의 警察活動(community policing)을 펼칠 수 있는 戰略을 구사하여 防犯 및 巡察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을 포함한 6대 도시의 경우 현행 1개 警察署 8개 課로 집중되어 있는 다양한 유사기능(情報課와 保安課, 刑事課와 搜査課, 警備課와 交通課)은 통합하여 課를 縮小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警察署 管轄을 人口, 面積, 地域的 特性과 같은 環境을 고려해서 재조정하여 관할규모를 축소하여 지금의 600여명의 직원 단위의 1개 警察署를 3개의 地區警察署 단위로 분할하여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大都市 警察署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地區警察署體制로 轉換하지 말고 각 地域의 治安需要를 적절히 고려해서 몇개 地域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成果를 評價.遷流하여 擴大施行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地區警察署組織

〈圖 4-1〉과 같이 현재의 경찰서장은 예하의 3개 지구경찰서를 감독하는 기능을 유지케 하여 감독관의 위치에 두고 경찰본부에는 보급과(현행 경무과를 대치하여 행정 및 보급지원 기능)와 수사과만 남겨두고 기타 3명의 과장은 地區警察署長으로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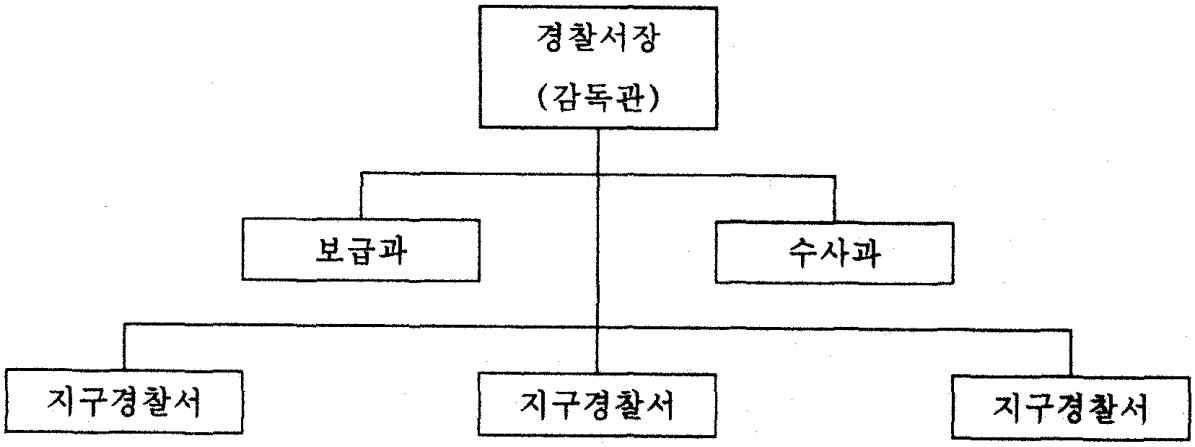

<圖 4-1> 새로운 警察署 組織

3) 地區警察署 運營 및 機能

地區警察署는 制服警察官으로 구성된 방범활동을 위주로 하는 기능을 유지케 하고 〈圖 4-2〉와 같이 巡察隊, 職務監察班, 地域社會擔當係, 行政支援係 등 네부서로 구성·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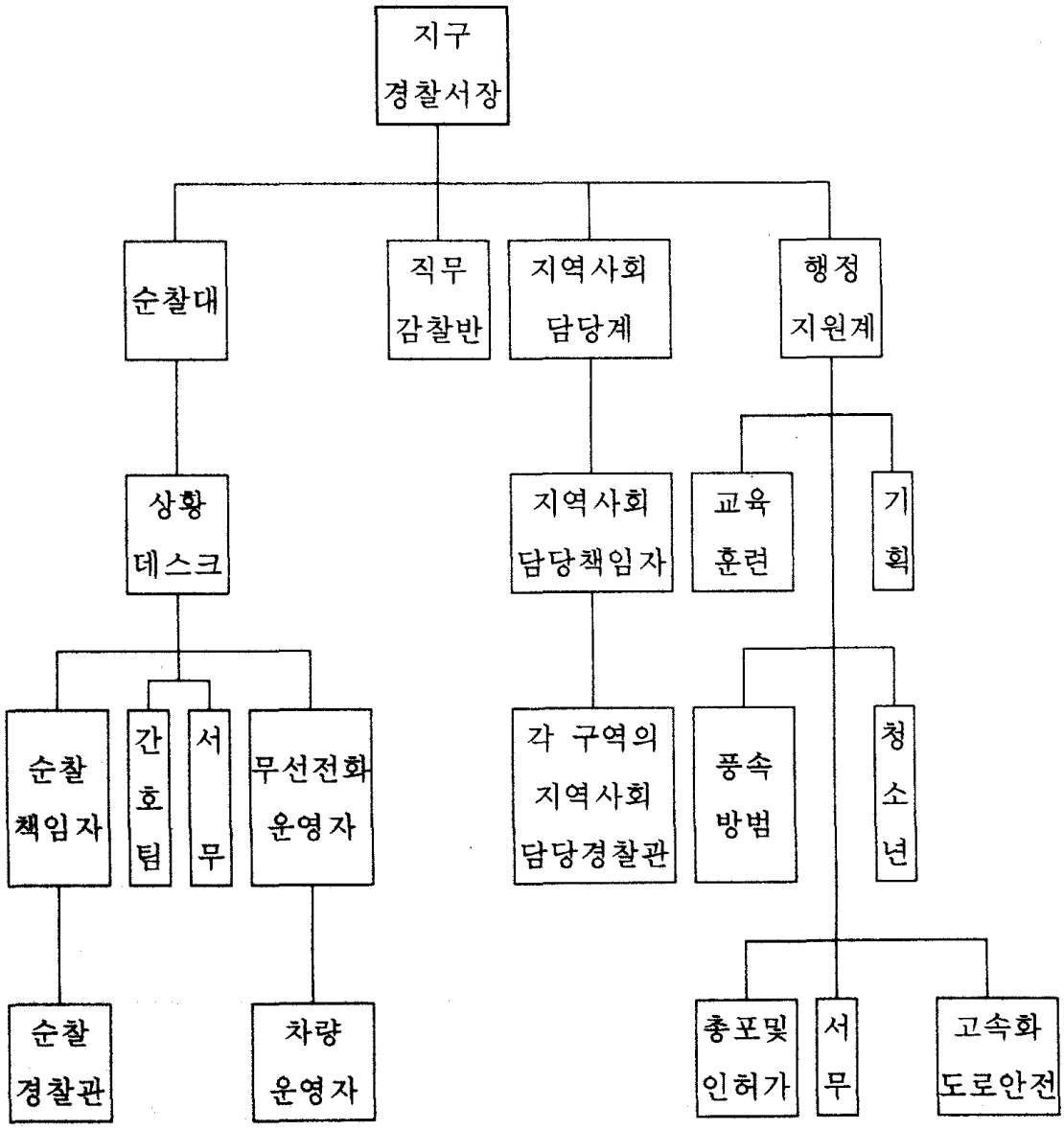

〈圖 4-2〉 地區警察署의 構成

(1) 巡察隊 構成

○ 巡察隊는 112車輛巡察, 오토바이(스쿠터)순찰, 自轉車巡察, 徒步巡察 중심의 경찰활동을 하게 된다.

○ 112巡察은 地區警察署의 주력으로서 地區警察署에서 統合.運營하며 관내를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 巡察車 位置確認裝置를 부착하여 監視監督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巡察車輛에 컴퓨터단말기를 설치하여 車輛과 사람의 手配指示나 警察署의 連絡.指示를 전달할 수 있게 科學化한다.

112巡察車輛은 관내 여건(교통정체, 골목길 등)에 따라 적극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巡察車輛의 크기를 다양화하여 小路나 작은 골목길 등에도 이용가능하도록 다양한 차량을 개발하여야 하고

治安與件上 管內의 都市空洞化 現象이 우려되는 곳은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戰略的 巡察로서 변경하되 기동력있는 오토바이와 차량순찰을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스쿠터는 일반 오토바이보다 소음이 적고 일반시민에 의해 쉽게 목격되어지는 가시성과 기동성이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병행하여 활용하면 높은 방범활동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일반 오토바이를 스쿠터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자전거순찰은 112순찰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접근할 수 없는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巡察效果가 입증된 바 있어 선진국에서 적극 개발·운영되고 있다.

자전거순찰은 우리 나라에서 1960 1970년대 주요 순찰수단이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그 효과를 기대하며 시도되었다가 활성화되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600개의 경찰활동단위에서 자전거순찰대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뉴욕시와 플로리다 및 오칼라 경찰에 의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5)]

뉴욕경찰은 Treck자전거회사와 계약에 의해 순찰용으로 특수 제작한(1대당 1,000달러) 산악용 자전거를 도입하여 야간순찰을 위한 헤드라이트와 자전거 뒷편

5) 1990년도 뉴욕시 경찰의 자전거순찰 실시 첫 6개월 동안의 실적으로 18정의 총기를 회수하였고 156명의 중범죄자를 체포하였고 211명의 경범죄자와 488명의 우범자를 체포하였다. 치안연구소, 치안시책자료, 제2호(1994. 9), 43쪽.

에 간단한 선반만을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서 도심지의 골목길에서 방범순찰근무를 하고 있다. 자전거순찰 장비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비해 간단하고 자전거 1대당 연간 평균 유지비용은 100달러에 불과하다.

○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이나 오토바이순찰의 활용에 의해 지역사회와 경찰기관의 단절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의해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으로 범죄자에게는 범행기회를 포기하게 해줌으로써 높은 방범효과와 지역사회와 주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하게 한다.

○ 순찰대는 3부제 근무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근무교대는 1조는 08:00~16:00, 2조는 16:00~24:00, 3조는 24:00~08:00 또는 1조는 07:00~16:00, 2조는 16:00~24:00, 3조는 24:00~07:00로서 운영한다.[6] 그리고 지구경찰서의 순찰경찰력의 10%는 낮 근무시간에 추가로 투입해도 좋을 것이다.

(2) 職務監察班

職務監察班은 경찰관들의 정직성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리, 사생활, 지역주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불평을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부서로 운영한다.

(3) 地域社會擔當係

이 부서는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범죄를 포함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보순찰 위주의 전담경찰관이 정해진 구역안에서 활동하는 부서이다. 이 부서는 청소년지도, 구역내의 주민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범죄예방홍보, 대민관계전담, 방범정보수집,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알콜.마약문제를 담당하는 지역사회문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4) 行政支援係

9) 인간의 생체리듬과 반해서 근무하는 심야근무자에게는 심야근무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7시간 근무하게 함.

① 構成

행정지원계는 지구경찰서장의 참모기능으로서 운영부서인 순찰대와 지역사회담당계가 원활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관리해 주는 행정부서이다. 여기에는 인사, 기획, 지역사회문제, 풍속, 청소년, 교육훈련, 인허가 서무를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② 機能

지구경찰서는 관할구역을 적정하게 구분하여(평균 10개 정도) 한 구역에 1명의 지역사회담당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구역책임담당자로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계몽, 지도,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행 파출소는 폐지하고 이들 공간을 지역사회담당구역 책임경찰관들이 구역내에서 활동하는 현장치안활동의 거점으로서 이용케 하여 구역책임경찰관들의 행동반경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케 하여야 한다. 물론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공공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담당구역 책임경찰관은 경력자로 하고 최소한 2년은 근무하게 하여 그 구역에 정통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체제는 지구경찰서 중심의 방범체제이기 때문에 근무교대 및 배치는 근무당일 지구경찰서에서 교양 후 배치근무케 하며 지구경찰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지휘.감독체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서 지구경찰서장의 판단하에 지향(directed)순찰, 표적(target)순찰, 적극적인 (proactive)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시간대별 방범수요에 따라 상업지역이나 도시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의 치안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계절별 특성이나 순찰목적에 따라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 신축적.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 오토바이 또는 스쿠터순찰, 자전거순찰, 도보순찰 및 지역사회담당 경찰관들의 활동으로 입체적 방범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전개된다.

범죄나 상황이 발생하여 시민의 출동요청을 위한 신고가 상황데스크에 들어오면 상황담당관의 지령에 의해 현장 경찰관들의 출동에 의한 입체작전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가능한 순찰대원에 의해 처리되고 지역사회담당구역책임경찰관은

이러한 응급전화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고(그러나 무선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을 자기들의 담당구역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감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담당구역 책임경찰관들은 오전, 오후 정해진 시간(예를 들면 오전 8시, 오후 2시)에 경찰서에 들어와서 활동보고나 접수된 지역주민들의 불평사항, 공지사항을 파악한 후 다시 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4) 搜査業務

수사기능은 지구경찰서 소속이 아닌 경찰서 소속으로서 이들은 지구경찰서에 배치되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경찰서 감독관의 지휘를 받게 하여 순찰기능과 이원화시킨다.

5) 敎育訓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고 지역사회문제의 전문가로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이 행해져야 한다.

2. 中小都市와 農漁村의 경우

현재의 치안여건상 인력 및 장비의 충분한 지원이 될 때까지 현행 경찰서 및 파출소제도를 활용하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행 파출소는 인력과 장비 등 순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파출소가 행정구역별로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의 치안수요에 따른 파출소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근무경찰관들의 근무여건이 대도시지역 경찰관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보충, 장비보급이 될 때까지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연기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圖 4-3>처럼 기존의 대단위파출소체

제의 모순점[7]을 보완.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기존의 파출소 단위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치안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파출소 규모와 관할구역을 설정하고 대단위파출소 규모에 맞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순찰 및 방범활동을 대단위파출소장에게 관할구역안에서의 경찰서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관할 치안상황에 따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는 치안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2부제근무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변두리 파출소는 치안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을 포함한 5 6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러한 파출소들은 비용면에서나 생산성면에서도 현실의 치안행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1개면 1개 파출소의 개념을 벗어나서 이들을 대단위파출소로 통합하여 정기적인 차량순찰이나 오토바이순찰로 대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일본의 주재소처럼 1명의 경찰관을 가족과 함께 상주시켜 남는 경찰력과 예산은 수사나 취약지 방범인력으로 보강하고 최첨단 수사장비, 112순찰차 등 기동장비를 구입하여 조직의 취약부분을 제거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사대상 K경찰서의 W파출소의 경우 관할면적이 93㎢로서 관할인구가 1,140명(360세대)인데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4명이 근무(1명 비번)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단 한건의 형사범 취급사항없이 소내근무, 대기, 순찰 등 기본근무만 하고, 관서운영에 따른 예산(도급경비 월 1,894,000원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소요)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8]

또한 K경찰서의 G파출소의 경우 관할면적이 152.78㎢로서 관할인구가 1,248명(450세대)인데 파출소장을 포함하여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역시 하루 종일 한건의 형사범 취급없이 소내근무, 대기, 순찰 등 기본근무만 하고 관서

9) 이상안 외, "派出所 防犯活動體制 改善方案," 治安硏究所, 治安論叢, 第11輯(1995), 77 79쪽.

8) 기타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봉급 외에 벽지수당이 월 25,000원씩 지급되고 대민수당이 소장은 월 10만원, 직원은 7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운영에 따른 예산(도급경비 월 1,894,000원)만 지급되고, 이들 직원들에게도 봉급 외에 벽지수당이 월 36,000원씩 지급되고 대민수당이 소장 월 10만원, 직원은 7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들 파출소의 경우 1993, 1994, 1995년의 3년 동안 범죄발생건수가 전혀 없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경찰서의 직제도 유사기능은 통합, 대폭 축소하여 업무지원, 관리기능으로 나누어 최소한의 필요인원만 경찰서에 잔류시키고 모두 운영부서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대단위파출소도 현행 경찰서 각과의 문서수발소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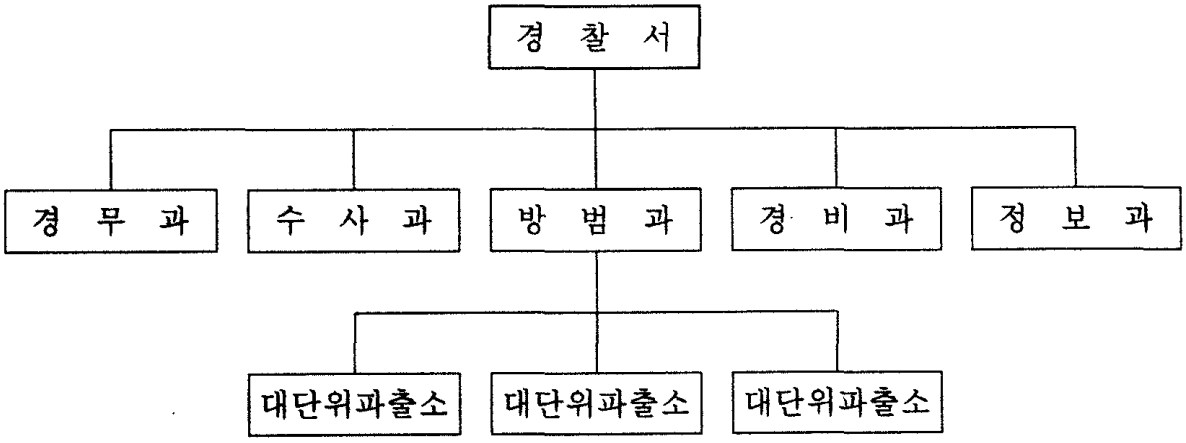

〈圖 4-3〉 中小都市.農漁村의 警察署와 派出所 構成

第5章 結 論 - 綜合評價와 政策建議

새로운 경찰 방범활동체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파출소체제, 대단위파출소 시범운영사례, 외국의 방범활동사례와 현직 경찰관과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찰 방범활동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제도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한 방범활동체제로서 현행 파출소제도를 탈피하여 중단위지구경찰서 모형을 개발하여 이 지구경찰서가 대도시 방범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대도시 방범활동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새로운 대도시 방범활동체제를 모든 지역의 경찰서에 획일적으로 적용·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각 대도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도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경찰방범활동체제도 현행의 대단위파출소체제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해서 한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체제로서 이용해 보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도시의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는 현행 한국경찰의 전통적인 순찰활동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차량순찰과 오토바이순찰과 같은 기동순찰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지역사회중심의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가미했기 때문에 주택지역보다는 상가지역이 많은 대도시 중심부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로 먼저 경찰서나 대단위파출소의 관할구역 규모를 재조정해서 현행 체제의 지역적 위치와 관할구역을 지정해서 현실의 치안환경에 맞게 조직편성을 새롭게 하여야 방범활동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도시 방범활동체제든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방범활동체제든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기존체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조직이나 운영체제를 새로운 방범체제에 적합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도시 방범활동체제는 완전히 현장활동 위주의 방범기능으로 전환하는 지구경찰서체제이므로 현행 경찰서의 조직을 대폭 통폐합하여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고, 지구경찰서의 방범활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이 새로운 경찰체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경찰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대도시 방범활동체제에서는 지역사회담당구역 책임경찰관이 주로 도보로 책임구역에서 활동하는 구역 전담기능과 차량순찰, 오토바이(스쿠터)순찰 및 자전거순찰과 같은 기동순찰을 차질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방범활동체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구경찰서의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새로운 방범활동체제의 중요성을 이해시켜 경찰조직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방범활동체제의 이론인 지역사회중심의 경찰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경찰방범활동에 대해 직원들의 교육훈련도 마땅히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새로운 방범활동체제의 실시는 현행 순찰제도와 운영체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찰직원과 지역사회담당직원의 배치문제, 지구경찰서의 기능정립문제,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문제, 현행 경찰서의 위상과 역할문제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表 3-4〉에서와 같이 請願警察이나 用役警備業體職員과 警察과의 業務協助體制가 잘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警察 단독으로 犯罪問題를 해결하는 데는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不足한 警察力을 보완하고 警察巡察死角地帶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住民自律防犯意識의 擴散은 물론 請願警察

과 用役警備員 身分의 一元化, 警備業務의 專門化와 警備員의 資質向上 등 用役警備業의 活性化 方案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범활동체제는 현재의 방범활동체제와는 여러가지 점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경찰관들의 의식과 태도에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參考文獻

Ⅰ. 國內文獻

1. 單行本

警察大學, 警察防犯論, 1994.

警察廳, 防犯全書, 1991.

_____, 研究企劃 綜合報告書 (短期對策篇), 1991.

內務部 治安本部, 2000年代를 向한 警察發展方向, 1985.

李相安, 新警察行政學, 서울: 대한문화사, 1995.

Donald O. Schultz(ed.), 李相元 南宮 共譯, 現代警察行政學, 서울: 進明文化社, 1992.

李潤鎬, 韓國刑事司法政策論: 犯罪의 理解와 統制, 서울: 法典出版社, 1992.

李璜雨, 警察行政學, 서울: 法文社, 1994.

鄭振煥, 比較警察制度(警察學叢書 Ⅰ), 서울: 圖書出版 大正, 1991.

趙炳仁, 犯罪對策論, 서울: 도서출판 한림원, 1993.

治安本部, 日本警察(外國警察制度 研究叢書 1), 1987.

_____, 美國警察(外國警察制度 研究叢書 2), 1988.

_____, 西歐警察(外國警察制度 研究叢書 3), 1989.

_____, 亞洲警察(外國警察制度 研究叢書 4), 1990.

_____, 防犯敎本, 1990.

韓國開發研究院, 2000年代 警察行政發展方案, 1992. 7.

_____, 警察 綜合情報體制의 構築方案, 1994. 6.

韓國生產性本部, 治安實態調査와 對策, 1991.

2. 論文

金甫煥, "效果的 犯罪統制를 위한 防犯體制의 改善: 都市警察을 中心으로,"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治安論叢, 第6輯(1989. 12), 19 48쪽.

김보환·전대양, "선진국의 새로운 방범기법," 민생치안연구소, 민생치안, 통권 제3호, 1992. 7.

_____, "우리나라 방범체제의 개선방향," 민생치안연구소, 민생치안, 통권 제4호, 1992. 9.

김상희 외, "派出所單位 防犯活動의 改善方案 研究," (研究報告書 90-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金泂淸, "警察巡察活動의 實態와 發展的 改善方案," (研究報告書 9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박길환, "C3制度와 民生治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0과학수사세미나 자료집, 1990. 10.

박병국, "지역사회지향의 방범활동," 민생치안연구소, 민생치안, 통권 제7호, 1993년 3.4월호.

徐載根,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警察의 民主化方案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公安行政研究所, 公安行政論叢, 第4號, 1988.

신동운, "民間의 自律防犯活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1989. 12. 1.

申鉉柱, "民生治安犯罪規制의 戰略과 理論," (연구보고서 89-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安海均, "犯罪豫防을 위한 警察과 市民의 役割", 民生治安研究所, 民生治安研究所創立記念 犯罪豫防을 위한 市民大討論會 主題發表論文, 1991. 12. 12.

이건종·전영실, "각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상안 외, "派出所 防犯活動體制 改善方案," 治安研究所, 治安論叢, 第11輯, 1995.

李潤根, "韓國 私警備 發展方案에 관한 調査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12.

李璜雨, "警察의 犯罪豫防活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1994. 9. 30, 67 100쪽.

임학순, "派出所 巡察活動의 實態와 改善方案," 搜査研究社, 搜査研究, 통권 제136호, 1995. 2.

趙炳仁, "警察의 世界化에 관한 研究,"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刑事政策研究, 통권 제21호(1995년 봄호), 73 108쪽.

崔榮一, "經濟的 環境變化에 따른 犯罪對策," 警察大學 治安研究所, 治安論叢, 第8輯, 1991.

崔應烈, "環境設計를 통한 犯罪豫防에 관한 研究: 住居侵入竊盜를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12.

3. 政府刊行物 및 其他

警察廳 防犯局, '94 112申告處理 實績分析.評價, 1995. 1. 14.

_____, 派出所 外勤業務 刷新方案, 1995. 1.

警察廳 防犯企劃課, 112指令室, [112申告센터]로 名稱變更(報道資料), 1995. 2 23.

警察廳 등 그 所屬機關 등 職制, 1991年 7月 23일 大統領令 第13431號.

內務部, 他部處協助業務調整, 1990.

民主黨政策委員會, [警察의 政治的 中立과 民生治安], 第101回 政策討論資料 1994. 6.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외근경찰관근무규칙, 1991. 7. 31. 경찰청훈령 제10호.

112순찰차 운영규칙, 1991. 7. 31. 경찰청 예규 제7호.

치안연구소, 치안시책자료, 제2호, 1994. 9.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3.

Ⅱ. 外國文獻

1. 日本文獻

1) 單行本

警察制度研究會 編, 警察(現代行政全集 23), 東京: ぎょせい, 1985.

警察廳, 警察白書(平成 4年版), 東京: 大藏省印刷局, 1992.

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 犯罪白書(平成 6年版), 東京: 大藏省印刷局, 1994.

上野治男, 米國の警察, 東京: 良書普及會, 1981.

2) 論文

關口祐弘, "適切な市民應接の推進について," 警察大學校, 警察學論集, 第41卷 第7號, 1988. 7.

生盛豊樹, "防犯保安警察について考える," 警察大學校, 警察學論集, 第44卷 第6號, 1991. 6.

岩愒登 中村清, "市民應接情報管理システムの推進方策," 警察大學校, 警察學論集, 第42卷 第12號, 1989. 12.1.

2. 英美文獻

1) Books

Adams, Thomas F., Police Patrol: Tactics and Techniqu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1.

Clarke, Ronald V. (e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uccessful Case Studies, New York: Harrow and Heston Publishers, 1992.

Cohn, Alvin W. and Emilio C. Viano, Police Community Relations, Philadel-

phia: J. B. Lippincott Company, 197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Developing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in the Houston Police Department, 1988.

Klockars, Carl B., The Idea of Polic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 Inc., 1985.

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 Understanding Crime Prevention, Boston: Butterworth-Heinemann, 1986.

O'Block, Robert L.,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St. Louis, Missouri: The C. V. Mosby Company, 1981.

Parker, L. C., The Japanese Police System Toda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4.

Shikita, Minoru and Shinichi Tsuchiya,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Japan, NY: Springer-Verlag, 1992.

Swanson, Charles R. and Leonard Territo, Police Admistration: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 1983.

Thornton, Robert Y. and Katsuya Endo, Preventing Crime in America and Japan: A Comparative, Armonk, New York: M. E. Sharpe, Inc., 1992.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State and Local Relation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Walker, S., The Police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92.

Westermann, T. D. and J. W. Burfeind, Crime and Justice in Two Socities-Japan and the United States,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1.

2) Articles

Alpert, Geoffrey P. and Roger G. Dunham, "Community Policing,"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14, No. 3, September 1986.

Brown, Lee P. and Mary Ann Wycoff, "Policing Houston: Reducing Fear and Improving Service," Crime and Delinquency, Vol. 33, No. 1, January 1987.

Depew, Robert, "Policing native communities: Some Principles and Issues in Organizational Theory,"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July-October 1992, pp. 461 478.

Trojanowicz, Robert C., "An Evaluation of Neighborhood Foot Patrol Program, "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11, No. 4, December 1983, pp. 410 419.

Williams, Hubert and Antony M. Pate, "Returning to First Principle: Reducing the Fear of Crime in Newark," Crime and Delinquency, Vol. 33, No. 1, 1987. 1.

〈附 錄 Ⅰ : 부 표〉

〈부표 1〉 112순찰차의 적정 탑승인원에 대한 경찰의 견해

인원(명)	빈도수	%
1	15	2.2
2	486	70.9
3	172	25.1
4	12	1.8
계	685	100.0

〈부표 2〉 도시규모별 방범대원의 도움에 대한 주민의 견해 단위 : 명(%)

도시규모 / 의경의 협조	대 도 시	중소도시	농 어 촌	계
많은 도움이 된다	23(10.2)	51(18.7)	30(28.8)	104(17.2)
약간 도움이 된다	82(36.3)	100(36.6)	40(38.5)	222(36.8)
그저 그렇다	62(27.4)	72(26.4)	16(15.4)	150(24.9)
별로 도움이 안된다	46(20.4)	41(15.0)	12(11.5)	99(16.4)
전혀 도움이 안된다	13(5.8)	9(3.3)	6(5.8)	28(4.6)
계	226(37.5)	273(45.3)	104(17.2)	603(100.0)

($X^2=25.61$ 자유도=8 $p< .005$)

〈부표 3〉 유관조직과의 협력도에 관한 경찰의 견해

유관조직과의 협력도8	빈도	%
아주 소극적이다	100	14.6
소극적이다	209	30.6
그저 그렇다	300	43.9
적극적이다	65	9.5
아주 적극적이다	3	0.4
잘 모르겠다	7	1.0
계	684	100.0

※ 주 : 방범활동과 관련이 있는 유관조직으로는 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부녀자회, 자율방범대, 통·반장, 선진질서위원회, 모범기사친목회 등이 있다.

〈附 錄 Ⅱ : 설문지〉

1. 경찰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찰청 치안연구소에서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범활동체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 나라 방범활동체제의 개선에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5월 일

경찰청 치안연구소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전화:02-365-4808)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서 한 곳에만 ∨표 해 주십시요)

1. 귀하의 파출소 관할지역의 치안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아주 양호하다. ____(2) 양호하다. ____(3) 그저 그렇다.
____(4) 불안하다. ____(5) 아주 불안하다.

2. 귀하의 파출소 관할지역에 범죄취약지구가 있는데도 방범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____(1) 아주 많다. ____(2) 많은 편이다. ____(3) 몇군데 있다.
____(4) 한 두군데 있다. ____(5) 모든 지역에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찰활동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요.

____(1) 범죄예방활동 ____(2) 범죄진압활동 ____(3) 시위진압활동
____(4) 대간첩활동 ____(5) 정보수집활동 ____(6) 교통단속활동

4. 파출소 업무중 실제로 많이 차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업무중 3가지를 순서대로 1, 2, 3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1) 순찰업무 ____(2) 공문처리업무 ____(3) 제조사업무
____(4) 자체경비업무 ____(5) 사건처리업무 ____(6) 시위진압동원

5. 귀하는 언제 방범순찰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낮에(오전 8시 오후 18시) ____(2) 초저녁에(오후 18시 21시)
____(3) 밤에(21시 24시) ____(4) 새벽에(0시 5시) ____(5) 아침에(5시 8시)

6. 현재의 파출소 중심의 방범활동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범죄예방효과가 매우 크다. ____(2) 범죄예방효과가 조금 있다.
____(3) 그저 그렇다. ____(4)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
____(5) 범죄예방효과가 전혀 없다. ____(6) 잘 모르겠다.

7. 귀하의 관할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도보순찰 ___(2) 자전거순찰 ___(3)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
___(4) 오토바이순찰 ___(5)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순찰

8. 귀하가 보시기에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효과가 매우 크다. ___(2) 효과가 조금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효과가 거의 없다. ___(5) 효과가 전혀 없다.

9. 귀하는 112순찰차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교통이 혼잡하여 출동시간이 지연된다.
___(2) 골목길 등이 많아 출동이 불가능한 곳이 많다.
___(3) 무전기의 성능이 불량해서 송수신이 잘 안된다.
___(4) 지령약어가 복잡하여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___(5) 순찰차량의 노후화로 기동력이 떨어진다.

10. 귀하는 112순찰차량의 승차인원은 얼마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1명 ___(2) 2명 ___(3) 3명 ___(4) 4명

11. 귀하의 파출소 관내사정(골목길, 고지대, 대로변 등)을 감안할 때 112순찰차의 기동성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기동성이 매우 크다. ___(2) 기동성이 조금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기동성 효과가 별로 없다. ___(5) 기동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12. 귀하가 보시기에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___(1)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___(2)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 것 같다.

___(3) 범죄예방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 같다.

___(4) 잘 모르겠다. ___(5) 모든 지역에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3. 귀하가 보시기에 112순찰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___(1)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___(2)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는 것 같다.

___(3) 범죄예방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것 같다.

___(4) 잘 모르겠다.

___(5) 모든 지역에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4. 파출소에서 1명이 소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아주 적절하다. ___(2) 적절하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부적절하다. ___(5) 아주 부적절하다

15. 귀하의 파출소와 관할구역내의 112순찰차와의 통신관계는 원활합니까?

___(1) 아주 잘 된다. ___(2) 잘 되는 편이다.

___(3) 연락이 되더라도 협조에는 애로가 많다.

___(4)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조도 안된다.

___(5) 상호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16. 현재의 구역책임 순찰제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아주 적합하다. ___(2) 적합하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부적합하다. ___(5) 아주 부적합하다.

17.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경찰서나 파출소의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아주 그렇다. ___(2) 그렇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그렇지 않다. ___(5) 아주 그렇지 않다.

18. 귀하는 파출소의 제조사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___(1) 제조사 업무가 방범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많다.

___(2) 제조사 업무가 많다. ___(3) 제조사 업무가 적당하다.

___(4) 제조사업무가 거의 없다.

19. 귀하는 파출소의 근무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형식적인 근무계획이다.

___(2) 직원의 근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___(3) 직원의 근무능력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

___(4) 직원의 근무능력에 맞게 편성하고 있다.

20. 귀하는 파출소의 현 2부제 근무교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___(1) 문제가 전혀 없다.

___(2) 문제가 약간 있으나 현행 교대제를 바꿀 필요는 없다.

___(3) 현행 교대제를 약간 개선시켜야 한다.

___(4) 현행 교대제를 완전히 개선시켜야 한다.

(3번과 4번에 응답하신 분은 20-1번으로 가시요.)

20-1. 그렇다면 현행 근무형태를 어떻게 개선하기를 원하십니까?

___(1) 3교대제(1일 8시간씩, 3교대) ___(2) 2교대제(1일 12시간씩, 2교대)

___(3) 3부제(일근, 당번, 비번) ___(4) 기타(어떻게:)

21. 귀하는 현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1) 가정생활에 불화를 줄 정도로 과중하다.

___(2) 2교대제라면 그런대로 괜찮다. ___(3) 다른 업무보다 많은 편이다.

___(4) 적절하다. ___(5) 모르겠다.

22. 귀하는 소내 및 대기 근무시간에 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___(1) 주로 개인용무나 잡담을 한다.

___(2) 휴식을 취한다. ___(3) 사건취급 및 처리를 한다.

___(4) 청사청소 및 비치부책을 정리한다. ___(5) 잡무를 처리한다.

23. 귀하의 파출소에 배치된 의경이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___(2)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___(5)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4번과 5번에 응답하신 분은 23-1번으로 가시요.)

23-1.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사명감의 결여 ___(2) 경험부족

___(3) 상사의 지시 및 명령 이행 자세 결여

___(4) 대민봉사의식의 결여 ___(5) 법률규정에 대한 지식 결여

___(6) 기타(무엇:)

24. 귀하의 파출소에 배치된 방범대원이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___(2)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___(5)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4번과 5번에 응답하신 분은 24-1번으로 가시요.)

24-1.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1) 사명감의 결여 ___(2) 경험부족

___(3) 상사의 지시 및 명령 이행 자세 결여

___(4) 대민봉사의식의 결여 ___(5) 법률규정에 대한 지식 결여

___(6) 기타(무엇:)

25. 귀하는 방범활동에 있어서 청원경찰이나 용역경비업체 직원과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아주 잘 된다. ___(2) 잘 되는 편이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서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별로 협조가 안된다.

___(5) 전혀 협조가 안된다.

26. 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협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___(1) 아주 협조적이다. ___(2) 비교적 협조가 되고 있는 편이다.

___(3) 주민은 중립적이다. ___(4) 비교적 냉담한 편이다.

___(5) 아주 비협조적이다.

(4번과 5번에 응답하신 분은 26-1번으로 가시요.)

26-1. 비협조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

___(2) 방범활동과 단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___(3)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므로

___(4) 협조하는 방법을 몰라서

27. 방범활동에 대한 유관조직(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부녀자회, 자율방범대, 통·반장, 선진질서위원회, 모범기사친목회 등)의 협력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___(1) 아주 소극적이다. ___(2) 소극적이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적극적이다. ___(5) 아주 적극적이다. ___(6) 잘 모르겠다.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28. 귀하의 연령은?

___(1) 20세 이상 30세 미만 ___(2) 30세 이상 40세 미만

___(3) 40세 이상 50세 미만 ___(4) 50세 이상

29. 귀하의 계급은?

___(1) 경감 ___(2) 경위 ___(3) 경사 ___(4) 경장 ___(5) 순경

30 귀하의 근무지는?

___(1) 경찰서 소재지 파출소 ___(2) 경찰서 소재지외 파출소

___(3) 경찰서 방범과 ___(4) 경찰청 방범국 ___(5) 지방경찰청 방범과

31. 귀하의 학력은(중퇴 포함)?

___(1) 무학 ___(2) 국졸 이하 ___(3) 중졸 이하

___(4) 고졸 이하 ___(5) 전문대졸 이하 ___(6) 대졸 이상

32. 귀하는 어떠한 채용방법에 의해 경찰에 임용되었습니까?

___(1) 순경공채 ___(2) 경장·경사특채

___(3) 간부후보생 ___(4) 경찰대학 ___(5) 기타

33.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의 방범활동체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백이 부족하시면 뒷면을 이용하십시요.)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방범활동체제를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주민대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경찰청 치안연구소에서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범활동체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우리 나라 방범활동체제의 개선에 활용될 것이오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5월 일

경찰청 치안연구소

(120-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전화:02-365-4808)

※ 다음 질문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곳을 골라 ∨표 해 주십시오.
(특별한 말이 없는 한 각 문항에 대해서 한 곳에만 ∨표 해 주십시요)

1.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의 치안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아주 양호하다. ___(2) 양호하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불안하다. ___(5) 아주 불안하다.

2.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 범죄취약지구가 있는데도 방범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___(1) 아주 많다. ___(2) 많은 편이다. ___(3) 몇군데 있다.
___(4) 한 두군데 있다. ___(5) 모든 지역에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경찰활동중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요.

___(1) 범죄예방활동 ___(2) 범죄진압활동 ___(3) 시위진압활동
___(4) 대간첩활동 ___(5) 정보수집활동 ___(6) 교통단속활동

4. 귀하가 보시기에 경찰의 방범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범죄예방효과가 매우 크다. ___(2) 범죄예방효과가 조금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
___(5) 범죄예방효과가 전혀 없다. ___(6) 잘 모르겠다.

5. 귀하는 파출소제도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범죄예방효과가 매우 크다. ___(2) 범죄예방효과가 조금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
___(5) 범죄예방효과가 전혀 없다. ___(6) 잘 모르겠다.

6. 귀하는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얼마나 목격하십니까?

___(1) 자주 목격한다. ___(2) 가끔 목격한다.
___(3) 거의 목격하지 못한다. ___(4) 전혀 목격하지 못한다.

7. 귀하는 경찰관이 언제 방범순찰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낮에(오전 8시 오후 18시) ___(2) 초저녁에(오후 18시 21시)
___(3) 밤에(21시 24시) ___(4) 새벽에(0시 5시)
___(5) 아침에(5시 8시)

8.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순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1) 도보순찰 ___(2) 자전거순찰 ___(3)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
___(4) 오토바이순찰 ___(5)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순찰

9. 귀하가 보시기에 112순찰차에 의한 순찰의 범죄예방효과는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___(1) 효과가 매우 크다. ___(2) 효과가 조금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효과가 거의 없다. ___(5) 효과가 전혀 없다.

10. 귀하는 파출소에 배치된 의경이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___(2)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___(5)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11. 귀하는 파출소에 배치된 방범대원이 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1)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___(2)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___(3) 그저 그렇다. ___(4)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___(5)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12. 경찰의 방범활동에 대한 귀하의 협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1) 아주 협조적이다. ____(2) 비교적 협조적이다. ____(3) 중립적이다.
____(4) 비교적 냉담한 편이다. ____(5) 아주 비협조적이다.
(4번과 5번에 응답하신 분은 12-1번으로 가시요.)

12-1. 비협조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1) 방범활동은 경찰의 일이지 주민의 일이 아니라고 여기므로
____(2) 방범활동과 단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____(3) 경찰협조에 대한 부담은 큰데, 혜택은 적다고 생각하므로
____(4) 협조하는 방법을 몰라서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13. 귀하의 연령은?
____(1) 20세 이상 30세 미만 ____(2) 30세 이상 40세 미만
____(3) 40세 이상 50세 미만 ____(4) 50세 이상

14.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은?
____(1) 단독주택지역(시단위) ____(2) 아파트나 연립주택지역(시단위)
____(3) 공업지역(시단위) ____(4) 상업지역(시단위)
____(5) 농어촌지역(군단위) ____(6) 기타( )

15. 귀하의 학력은(중퇴 포함)?
____(1) 무학 ____(2) 국졸 이하 ____(3) 중졸 이하
____(4) 고졸이하 ____(5) 전문대졸 이하 ____(6) 대졸 이상

16. 귀하의 혼인상태는?
____(1) 미혼 ____(2) 결혼 ____(3) 사별 ____(4) 이혼

17. 귀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___(1) 남자 ___(2) 여자

18.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___(1) 30만원 미만 (2)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___(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___(4)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___(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___(6) 300만원 이상

19.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의 방범활동체제를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백이 부족하시면 뒷면을 이용하십시요.)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협조는 우리나라 방범활동체제를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